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The World Comes to Jeju, and Jeju Goes to the World

2013 계약심사 사례집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목 차

I . 계약심사제도 현황	3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5
2. 계약심사제도 운영 근거	5
3. 계약심사대상	6
4. 계약심사흐름도 및 업무처리절차	7
5. 주요 계약심사 내용	7
6. 계약심사 주요성과	8
7. 효율적인 계약심사제 운영	12
II .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15
1. 토목공사 분야	17
2. 건축공사 분야	61
3. 전기, 통신, 소방설비 공사 분야	75
4. 기술용역 분야	91
5. 일반·학술용역 분야	99
6. 물품 제조·구매 분야	105
7. 인쇄물 분야	115
III . 부 록	121
1.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 지침	123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39
2-1. 예정가격 작성 요령	139
2-2. 계약심사 운영 요령	178
3. ‘13 물품 제조구입에 따른 제조원가 조사 및 작성기준	210
4. 계약심사 관련 추천 인터넷 사이트	268

I . 계약심사제도 현황

순 서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2. 계약심사제도 운영 근거
3. 계약심사대상
4. 계약심사흐름도 및 업무처리절차
5. 주요 계약심사 내용
6. 계약심사 주요성과
7. 효율적인 계약심사제 운영

계약심사제도 현황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
 - 원가계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예산을 절감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
 -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 공사·용역·물품 내역에 대해 원가심사 부서에서 거래실례가격조사, 현지확인, 창의적 공법 도입 등을 통해 적정 원가를 산출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발주부서의 설계능력을 향상 도모
- ※ 특히, 계약심사 결과는 계약부서의 예정가격 작성을 지원하고 있음

2. 계약심사제도 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심사 운영요령)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 예규 제43호

3. 계약심사 대상

○ 심사대상 기관

-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도의회사무처, 행정시
- 지방공기업,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 도 본청 및 행정시 등(국·도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사업)

○ 심사대상 사업

심사내용	대 상 사 업
공 사	○ 추정금액 5억원이상(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기술용역	○ 추정금액 2억원이상
일반·학술용역	○ 추정금액 2억원이상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원이상
설계변경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 되거나(2회 이상 설계변경으로 누적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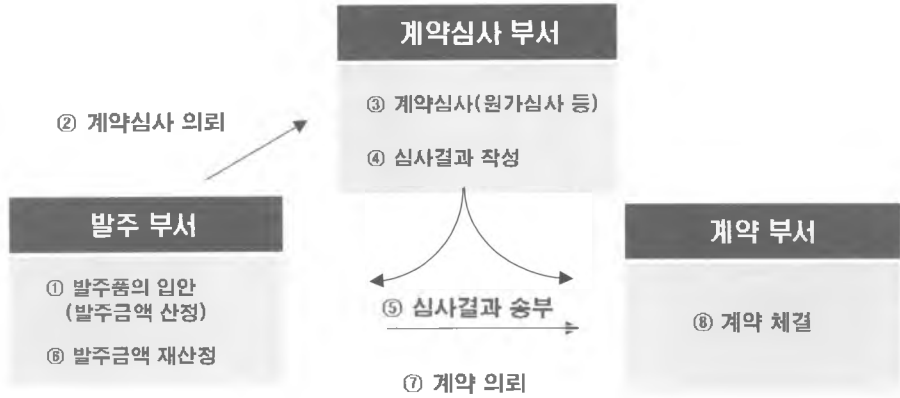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자재대 + 부가세

○ 계약심사 제외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 전년도 평균조정율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한 사업
-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4. 계약심사 흐름도 및 업무처리 절차

1) 흐름도



2) 업무처리 절차(처리기간 10일 ⇒ 단축 5일)

① 심사요청 접수	□ 발주부서 (행정시, 공사 등 포함)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발주부서)
③ 심 사	□ 원가 심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 등 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이전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행정시, 공사 등 포함), 실적 DB 관리

5. 주요 계약심사 내용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율 효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조달가격,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의 가격적용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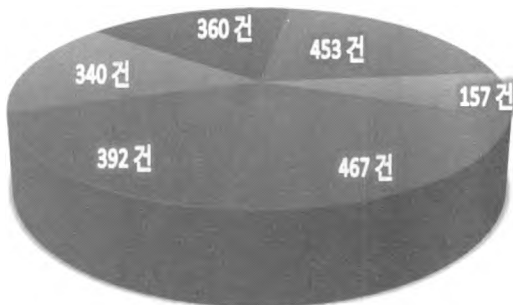
6. 계약심사 주요성과

지난 2008. 8. 13일 계약심사부서(1담당 5명)를 설치, 동년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2013년 12월말 현재까지 심사요청 된 2,133건 23,952억원을 심사하여 23,370억원으로 조정하여 조정 결과 1,583억 (6.61%)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하고 있음.

○ 연도별 계약심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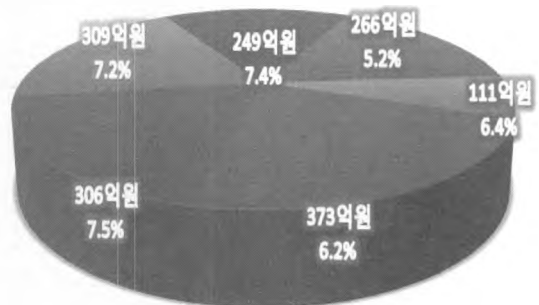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심사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조정액	조정금액	조정율	비고
합 계	2,169	2,451,749	2,290,383	△161,366	△6.59%	
2013년	467	599,549	562,250	△37,299	△6.22%	
2012년	392	407,281	376,641	△30,640	△7.52%	
2011년	340	430,523	399,619	△30,904	△7.17%	
2010년	360	333,850	309,003	△24,847	△7.44%	
2009년	453	508,846	482,218	△26,628	△5.23%	
2008년(10~12월)	157	171,700	160,652	△11,048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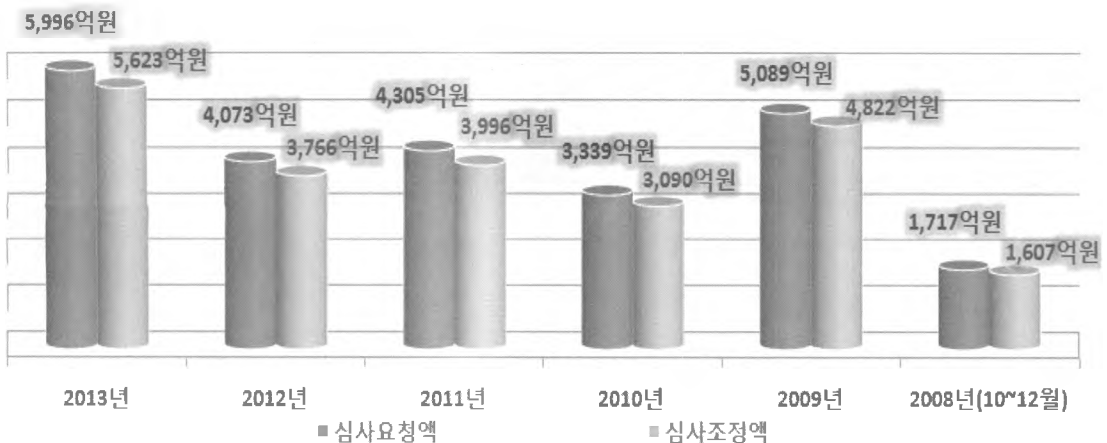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10~12월)

연도별 계약심사 건수 비교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10~12월)

연도별 예산절감액 및 절감율 비교



연도별 계약심사 신청액 및 심사 조정액 비교

○ 분야별 계약심사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율	비 고
합계	계	2,169	2,451,749	2,290,384	△161,366	△6.59%	
	공사	1,261	2,156,648	2,008,618	△148,030	△6.86%	
	용역	240	207,487	196,167	△11,320	△5.46%	
	물품	668	87,614	85,599	△2,015	△2.30%	
2008년	소계	157	171,700	160,652	△11,048	△6.43%	
	공사	74	154,454	143,956	△10,498	△6.80%	
	용역	11	4,464	4,313	△151	△3.38%	
	물품	72	12,782	12,383	△399	△3.12%	
2009년	소계	453	508,846	482,218	△26,628	△5.23%	
	공사	241	440,661	417,008	△23,653	△5.37%	
	용역	53	48,139	45,690	△ 2,449	△5.09%	
	물품	159	20,046	19,520	△ 526	△2.65%	
2010년	소계	360	333,850	309,003	△24,847	△7.44%	
	공사	201	283,655	260,597	△23,058	△8.12%	
	용역	44	36,676	35,109	△ 1,567	△4.27%	
	물품	115	13,519	13,297	△ 222	△1.63%	
2011년	소계	340	430,523	399,619	△30,904	△7.17%	
	공사	213	386,122	357,838	△28,284	△7.32%	
	용역	38	31,663	29,291	△ 2,372	△7.49%	
	물품	89	12,738	12,490	△ 248	△1.94%	
2012년	소계	392	407,281	376,641	△30,640	△7.52%	
	공사	256	359,189	330,310	△28,879	△8.04%	
	용역	38	36,333	34,778	△ 1,555	△4.28%	
	물품	98	11,759	11,553	△ 206	△1.75%	
2013년	소계	467	599,549	562,250	△37,299	△6.22%	
	공사	276	532,567	498,909	△33,658	△6.32%	
	용역	56	50,212	46,986	△ 3,226	△6.42%	
	물품	135	16,770	16,356	△ 414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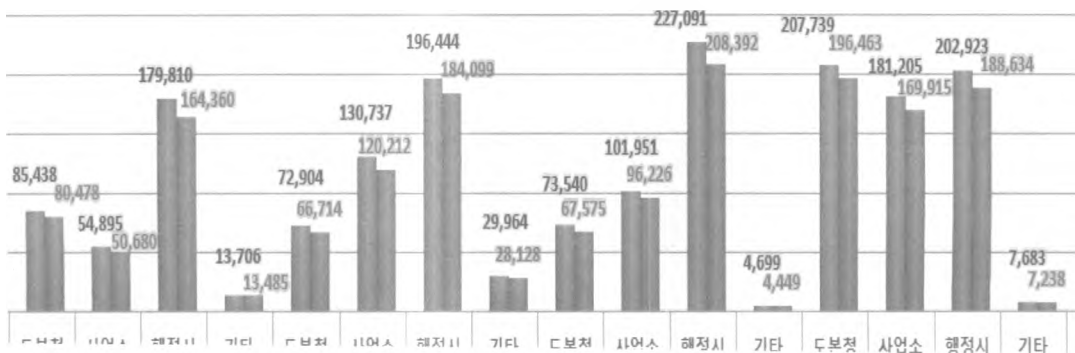


연도별 분야별 예산절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관별 계약심사 실적

(단위: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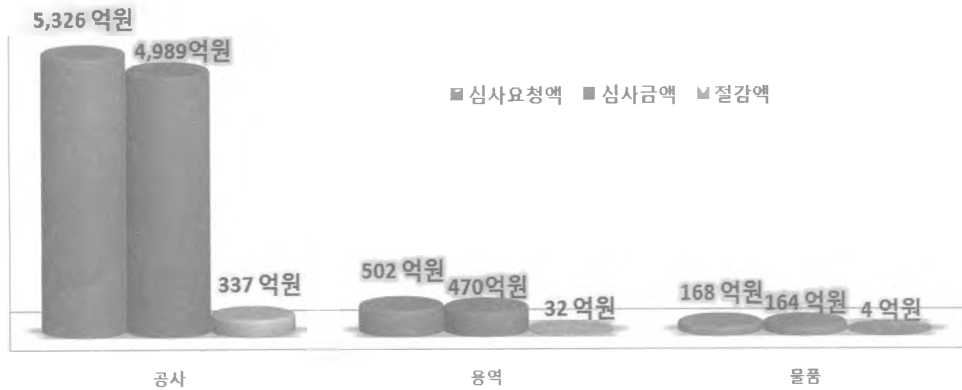
	구분	심사건수	심사요청금액	심사조정금액	절감액	절감율	비고
2010년	소 계	360	333,850	309,003	24,847	7.44%	
	도본청	75	85,438	80,478	4,961	5.80%	
	사업소	99	54,895	50,680	4,215	7.67%	
	행정시	153	179,810	164,360	15,450	8.59%	
	기타(출연기관)	33	13,706	13,485	221	1.61%	
2011년	소 계	338	430,049	399,153	30,895	7.18%	
	도본청	70	72,904	66,714	6,190	8.49%	
	사업소	104	130,737	120,212	10,525	8.05%	
	행정시	143	196,444	184,099	12,345	6.28%	
	기타(출연기관)	21	29,964	28,128	1,836	6.12%	
2012년	소 계	392	407,281	376,641	30,640	7.52%	
	도본청	81	73,540	67,575	5,965	8.11%	
	사업소	133	101,951	96,226	5,725	5.61%	
	행정시	161	227,091	208,392	18,699	8.23%	
	기타(출연기관)	17	4,699	4,449	250	5.32%	
2013년	소 계	467	599,549	562,250	37,299	6.22%	
	도본청	104	207,739	196,463	11,275	5.42%	
	사업소	157	181,205	169,915	11,290	6.23%	
	행정시	184	202,923	188,634	14,289	7.04%	
	기타(출연기관)	22	7,683	7,238	444	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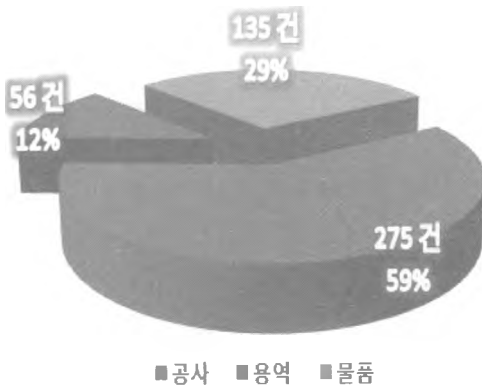
○ 계약심사 처리기간 현황

(단위: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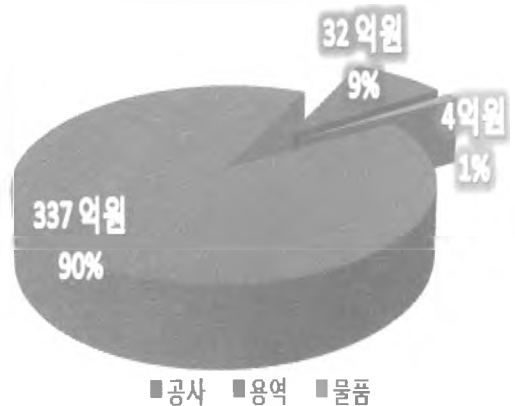
○ 2013년도 계약심사 추진 실적



2013년도 계약심사 분야별 예산 절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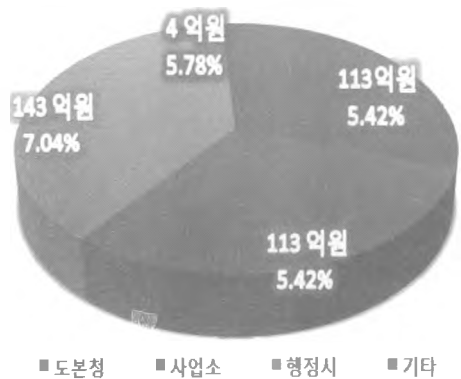
'13년 계약심사 형태별 처리건수 현황



'13년 계약심사 형태별 예산절감 현황



'13년 기관별 심사 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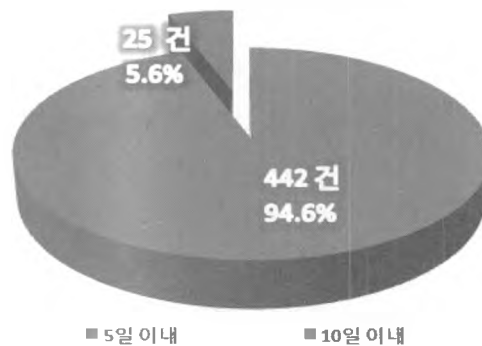


'13년 기관별 예산절감 현황

○ 계약심사 처리기간 현황

(단위:건, %)

구분	합 계		5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초과		비고
	건수	처리율	건수	처리율	건수	처리율	건수	처리율	
2010년	360	100	315	87.5	44	12.2	1	0.3	
2011년	340	100	320	94.1	20	5.9	-		
2012년	392	100	372	94.9	20	5.1	-		
2013년	467	100	442	94.6	25	5.4	-		



2013년도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율

7. 효율적인 계약심사제 운영

○ 탄력적인 원가심사제 운영

- 계약심사 대상기관에서 심사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서 작성과정에서 공정 및 노무비 누락 등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발생분에 대하여 증액을 통한 탄력적 심사로 설계서의 완성도 제고로 공사 중 설계변경 및 부실공사 사전 예방
- 발주부서의 설계 누락부분 및 단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할 때는 타 항목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하고 감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증액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통보

○ 계약심사 실무 교육 실시

- 일 시 : 2013. 12. 17(화) 15:00~17:00
- 장 소 :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
- 참석대상 : 본청, 직속기관, 원, 사업소, 행정시, 지방공사, 출연법인 등 발주부서 및 계약업무 담당자 50여명

- 교육내용

- 계약심사 제도, 심사대상 및 방법, 심사업무 처리 흐름도 설명
- 발주부서, 계약부서, 심사부서별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개정 내용 설명
- 물품제조 원가 조사 및 원가작성 기준 수립 내용 설명



계약심사 제도 실무 교육

○ 개방적 계약심사제 운영

-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위한 주기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계약심사 담당자 전문성 제고
- 감사위원회 직원을 초빙하여 계약심사 담당자 자체 교육 실시
- 부서 내에 “예산 상담실” 운영
- 설계서 작성을 위한 전문서적 비치
- 상담을 통하여 사업부서와의 갈등 유발 가능성 해소



사업부서와의 갈등 유발 가능성 해소를 위한 상담실 설치 등 열린 계약심사제 운영

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순 서

1. 토목공사 분야
2. 건축공사 분야
3. 전기,통신, 소방공사 분야
4. 기술용역 분야
5. 일반·학술용역 분야
6. 물품 구매·제조 분야
7. 인쇄물 분야

1. 토목공사 분야

○○○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석쌓기 2,447^{m³}
 - 콘크리트포장 3,434^{m²}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801	717	△84	△10.5

III 주요 심사 내용

- 피복석(전석)쌓기 단가 조정
 - 현장실정 및 시공방법에 맞게 항만공사 → 석공 전석쌓기 적용
- 뒷채움잡석(0.015^{m³}~0.03^{m³}) 포설 및 다짐 수량 조정
 - 토사 유출방지 부직포 시설로 뒷채움잡석(0.015^{m³}~0.03^{m³}) 두께(뒷길이) 1.0m→0.6m 조정
- 전석 및 뒷채움잡석 석산(토석채취장) 구입자재 수량 조정
 - 전석(0.5^{m³}급) 2,153^{m³} → 1,451^{m³} 적용
 - 뒷채움잡석(0.015^{m³}~0.03^{m³}) 2,545^{m³} → 1,380^{m³} 적용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V 시공 현장 모습



○○○지구 발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송·급수관로 6조·870m
 - 경작로 3조·1,565m
 - 저류지 1개소, 배수로 2조·425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1,397	969	△428	△30.6

III 주요 심사 내용

- 아스팔트 포장깨기 수량 및 공법 조정
 - 굴착부의 여유폭(50cm)에 대한 포장깨기(표층 5cm) 수량에 대하여 시공방법에 맞게 공법 조정(포장깨기→표층 아스팔트 절삭)
- 표층 아스콘, 되메우기 및 다짐, 와이어메쉬 등 수량오류 조정
- 석분 체적환산계수 조정결과로 구입 수량 조정
- 교량부 강관매기 단가 및 수량오류 조정
 - 시공방법에 맞게 STS강판 → STS강관 적용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 동지역(○○○공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오수관거 L=29,282m, 맨홀펌프장 2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20,851	18,156	△2,695	△12.9

III 주요 심사 내용

- 토공 운반계획(수량) 조정
 - 현장(터파기) → 적치장 → 사토처리로 일괄 계획된 토공물량을 되메우기 물량에 대하여만 적치장 이용하고 그 외 잔토량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직 상차하여 사토처리
-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단가 조정
 - 설계도에 맞게 터파기 높이(h값 : 평균치 적용)조정
- 기층 아스콘포설 및 다짐 단가 조정
 -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현장여건 및 시공폭에 맞게 작업량(일당) 조정
(1.4m≤시공폭<3m 에 의한 시공량 2,000㎡/일 적용)
- ASP 절삭 및 표층 덧씌우기 수량 조정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밀링깊이 75mm → 50mm 적용
- 안전보호책 설치 및 철거 단가 조정
 - 현장여건 및 작업량에 맞게 50m/일 설치·철거기준 적용
- 옥외 배수설비 토공, 포장공 수량 조정

- 옥외 배수설비는 본관과 오수받이를 연결하는 관로로서, 본관 매설에 따른 전면 포장복구 구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수설비 포장복구 (토공·포장공)가 필요치 않아 제외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지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수지(3,000TON) 1지, 송·배수관로(D250mm) L=945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2,147	1,981	△166	△7.7

III 주요 심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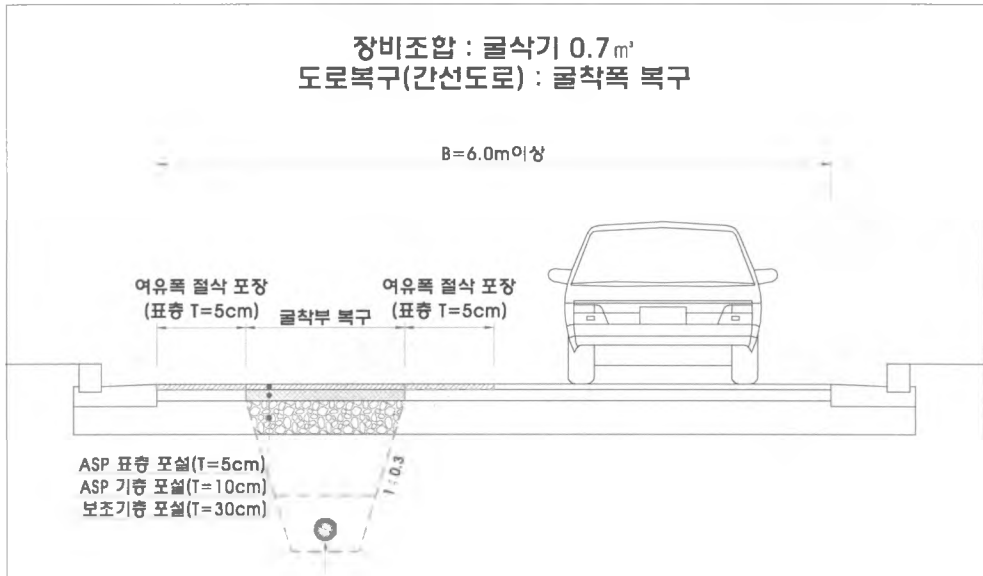
-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9.2% → 10.0% 적용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의 5.9% → 6.2% 적용
- 송·배수관로 매설지역은 포장폭 3.5m 도로로서 관로매설 굴착시 대부분 포장깨기가 이루어지므로 전면포장으로 복구계획 조정
- 배수지 추정암반선 조정 → 흙깎기 수량 조정
- 시멘트벽돌쌓기 품에 재료비(벽돌)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계상된 벽돌 자재단가 제외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두께(30cm → 20cm) 및 포장계획 조정결과에 의한 수량 재 산출결과 반영

IV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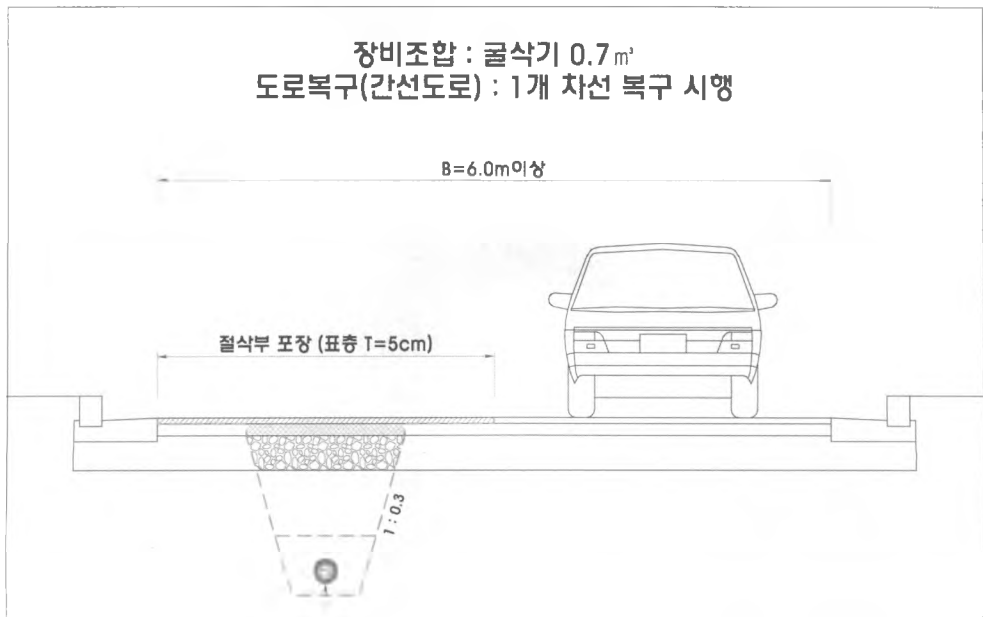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포장 복구 시설단면》

(계약심사 전 복구 단면도)



(계약심사 후 복구 단면도)



○○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2.192km(B=10.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3,368	2,807	△561	△16.7

III 주요 심사 내용

- 무근콘크리트 깨기 수량 조정
 - 농로포장 두께(20cm → 15cm 적용)에 맞게 수량 재 산출
- 흙막기(암) 및 터파기(암) 단가 조정
 - 지역실정을 반영한 해당암질(연암+보통암 평균치) 적용
- 법면보호공 떼붙임 단가 조정
 - 2013년 상반기적용 건설표준품셈 개정결과 반영
- 터파기 수량 조정
 - 배수개선사업에 포함된 일부구간 터파기 공제
- 석축수로 단가 조정
 - 석축수로 바닥부에 불필요한 와이어메쉬(용접철망)설치 제외
- 저류지설치 전석쌓기 수량 조정
 - 추정암선 이하에 대하여 전석쌓기 제외
- 임시 침사지 및 저류지 PP마대 쌓기 수량 조정
 - 추정암선 이하에 대하여 PP마대 설치 제외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3.065km(B=8~12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3,273	2,544	△729	△22.3

III 주요 심사 내용

- 흙깍기(암), 터파기 단가 조정
 - 지역실정을 반영한 해당암질(보통암 → 연암+보통암 평균치) 적용
- 성토재(암) 운반(도자, 덤프운반) 단가 조정
 - 현장실정에 맞게 소할 30%적용
- 임목폐기물처리 수량 조정
 - 제재소 활용등 재활용 가능한 수목(삼나무 등)제외
- 석축쌓기 수량 조정
 - 추정암선 이하에 대하여 석축쌓기 물량 제외
- 전석 채집·운반 단가 조정
 - 주변현장(L=25km) 사토재(암) 활용하는 단가 적용
- 오수관로 시험방법 조정(수밀시험 → 공기압시험)
- 도로공사 시험기준에 맞게 시험횟수 조정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개설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06km(B=15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2,971	2,731	△240	△8.1

III 주요 심사 내용

- 사토운반(암) 단가 조정
 - 흙깎기 및 터파기 단가계산에 적재 품이 반영되어 있어 사토운반에 포함된 적재 품 제외
- 배수관부설 단가 조정
 - 석분부설 단가가 별도 계상되어 있어 배수관부설에 포함된 석분부설 단가 제외
 - 건설표준품셈에 맞게 부설 품(본당) 조정(배관공 0.26인 → 0.17인, 보통인부 1.04인 → 0.52인, 크레인 0.68hr → 0.48hr 적용)
- PC암거 설치 단가 조정
 - 강선인장 : 프론티재킹공법의 강선제작 설치 품 적용
- L형측구 설치 단가 조정
 - 일일 시공량(50m→80m 적용) 조정결과 반영
- 오수관 : PE관 → PVC 이중벽관 적용
 - 수자원본부 하수관거정비사업 공통 사용자재 반영
- 석축쌓기(메쌓기, 뒷길이 35cm) 단가 조정

- 건설표준품셈에 맞게 조정(석공 0.25인→0.07인, 보통인부 0.2인→0.03인, 장비(굴삭기 0.6m³급) 0.3hr)
- 주철관 부설 및 접합(100mm) 단가 조정
 - 부설품만 반영되어 있어 접합품 추가 적용
- 표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단가 조정
 - 현장여건 및 표준품셈에 맞게 일일시공량 2,000m²(1.4m≤시공폭<3m) → 5,000m²(3m≤시공폭)적용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 동지역 (○○·○○) 하수관거 정비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오 수 관 거(D80~300mm) L=8,331.0m
 - 우 수 관 거(D250~600mm) L= 620.0m
 - 배 수 설 비 677가구
 - 자가 펌프장 15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II 심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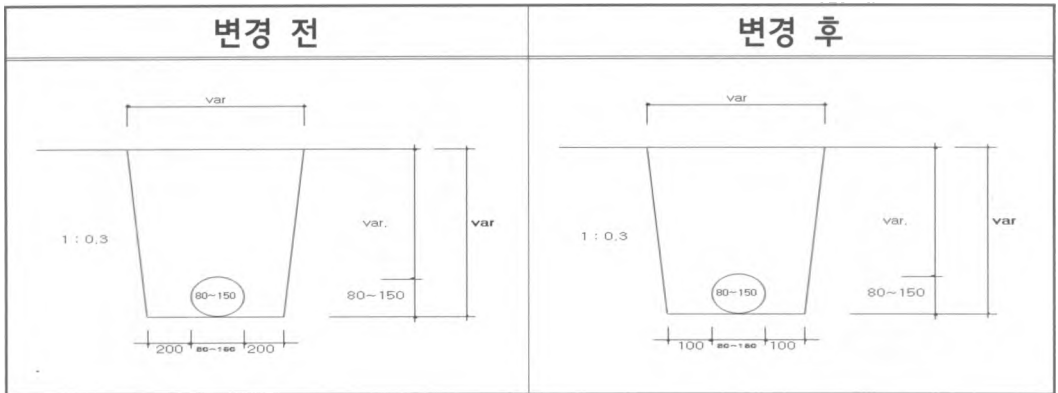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6,553	5,859	△694	△10.6

III 주요 심사 내용

- 오수관로 시험방법 조정(수밀시험 → 공기압시험)
- 차선도색 단가조정
 - 기존 차선도색 방식 등에 의한 융착식 → 상온형 적용
- 가시설(조립식간이흙막이공) 단가 조정
 - 조립식간이흙막이 규격(폭 1.5m → 1.2m) 조정
- 돌담쌓기 및 헐기 단가 조정
 - 기존 전석쌓기 품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메쌓기 중 깎잡석(30cm) 품으로 변경
- 가설사무소 면적 조정
 - 감리사무소는 통합으로 운영하여, ○○처리분구 공사에 일괄 계상하므로 금회 가설사무소 면적에서 삭제
- 연결관, 배수관 터파기 수량 조정

- 옥외, 옥내 배수설비 터파기 굴착 여유폭 조정



- 옥외 배수설비 포장공 수량 조정
 - 옥외 배수설비는 본관과 오수받이를 연결하는 관로로서, 본관 매설에 따른 전면 포장복구 구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수설비 포장복구가 필요치 않아 제외
- 터파기 및 되메우기 단가 조정
 - 최근 소형장비의 개발·투입에 따른 실 작업방법에 맞게 인력100% → 기계30% + 인력70% 적용
- 옥내 콘크리트포장 수량 및 단가 조정
 - 현장실정에 맞게 포장두께 20cm → 10cm 적용
 - 품셈 제2편 12-3-2 콘크리트 표층 인력시공 품을 적용하였으나,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진입이 어려운 가옥내 공사임을 감안하여 시공량의 50%를 감하여 적용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항 물양장 보강 및 증설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TTP설치 172개, 물양장시설 L=25.1m, 준설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702	619	△83	△11.8

III 주요 심사 내용

- T.T.P 이적, 운반·거치 단가 조정
 -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근거 블록거치(난적) 일일 시공량 조정
- 사석구입운반 수량 조정
 - 가도 도로폭 조정 및 어장진입로공 사토재 활용
- 가도공 사석투하 단가 조정
 - 현장여건 및 시공방법에 맞게 사석투하 → 사석부설 적용
- 기초사석고르기(수중) 및 피복석고르기(수중)단가 조정
 - 현장여건에 의한 건설표준품셈 적용 단가 재 산정
- 블럭거치 단가 조정
 - 블럭거치 걸기 및 풀기 인부 중복계상으로 조정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계단식 옹벽(콘크리트타설 1,455m³) 1식
 - 영구앵커 95공, 기타 가옥철거 등 부대공사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682	628	△54	△7.9

III 주요 심사 내용

-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81% + 3,294천원 → 2.48% 적용
 - 간접노무비 : 직노의 10.5% → 10.0% 적용
- 구조물철기(가옥) 단가 조정
 - 구조물철기에 반영된 잡철물(금속 및 철재류)은 건물철기시 발생하는 잔재물로 별도 계상된 잡철물 철거 품을 제외
- 영구앵커 그라우팅 단가 조정
 - 건설표준품셈 비탈면 보강공 그라우팅 품 적용(품셈 3-9)
- 계단식옹벽 강관비계 제외
 - 하부에서 상부로 시설하는 계단식 구조물로서 강관비계가 필요치 않아 현장실정에 맞게 강관비계 적용 수량 제외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문화광장 조성사업(○○○광장) 지장물 철거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광장 지장물 철거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459	381	△78	△17.0

III 주요 심사 내용

- 2차선별 수량 조정
 - 1차선별이 별도 계상되어 있어 현장실정에 맞게 혼합폐기물에 대하여만 2차선별비 반영
- 건물철거 수량 조정
 - 단가계산은 체적(m³)으로 산출되어 있고 수량은 면적(m²)으로 적용됨에 따라 건물철거 수량 재 산출
- 석면해체 및 제거 단가 조정
 -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투입인력 적용 단가 재 산출
- 가설웬스 설치 및 해체 단가 조정
 - 현장여건에 맞게 가설웬스 높이(3m) 및 설치기간(손율) 조정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 치유의숲 조성사업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치유의 숲 조성 1식
 - 진입로 시설 L=1,940m(B=4.0m), 주차장 시설 A=4,123㎡
 - 숲속광장, 편백잎욕장, 오고생이교실, 숲속요가교실, 숲속휘트니스, 명상의 숲, 치유숲길 조성 1식
 - 기타 쉼터정비 및 상수도 및 오수시설 등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1,242	961	△281	△22.6

III 주요 심사 내용

- 법면보호공(줄때) 단가 조정
 - 법면보호공 단가에 면고르기 품이 계상되어 있어 별도 계산된 성토면 고르기 품 제외
- 호형 돌수로 단가 조정(공통사항)
 - 돌수로 설계도에 맞게 수량 조정사항(중간치 적용)에 의한 단가 재 산출
- 잔디블럭시설 단가 조정
 - 잔디식재 수량 조정(잔디블럭 ㎡당 100% → 30% 적용) 반영
- 데크로드시설, 목교설치 단가 조정
 -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마루널깔기 적용
- 상수관로 보호재 : 모래 → 석분 적용

- 오수처리시설(FRP 45m³/일) 단가 조정
 - 지역업체 등 확대 견적에 의한 재 조사단가 반영
- 가설사무소(콘테이너) 단가 조정
 - 공사기간에 맞게 손율(12개월→7개월) 적용 조정
- 잔디블럭, 데크재(삼나무), 야외탁자(목재형 1770× 1680× 740) :
관급자재 적용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제주○○○○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1.36km(B=20.0~24.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5,204	4,437	△767	△14.7

III 주요 심사 내용

- 전석혈기 수량 설계도에 맞게 누락수량 추가 반영
-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수량 조정
 - 포장단면(보조기층 두께 21cm → 30cm) 조정
- 표준블럭 소운반 단가 제외
 - 표준형 블록(보강토 옹벽) 설치 품에 소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계상된 소운반비 제외
- 탄성포장재 설치 단가 제외
 - 자재대(관급자재 설치도 가격)에 시설품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계상된 탄성포장 설치단가 제외
- 도로표지병(경계석용) 수량 조정
 - 설계도에 맞게 재 산출결과 반영 : 2,120개 → 106개 적용
- 피라캣다스 식재 단가 조정
 - 조경공 : 0.07인 → 0.006인, 보통인부 : 0.06인 → 0.002인 반영
- 돌담쌓기 수량 조정
 - 설계도에 맞게 수량 재 산출결과 반영
- 오수관로 관종 수자원본부 하수관거정비 공통자재 적용(PE관 → 고강성

PVC이중벽관)

- 토공, 조경수목(먼나무) 식재 수량 조정
 - 설계도에 맞게 수량 재 산출결과 반영
- 가설사무실 시설금액 조정
 - 공사규모(직접노무비) 조정결과 반영
- 차량점용 자전거도로 난간(F형) : 관급자재 적용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천(○○대학인근)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토 공 : 흙깎기(토사) 4,156㎥, 흙깎기(암) 540㎥
사토운반(토사) 5,676㎥, 사토운반(암) 92㎥
 - 구조물 공 : 전석쌓기 2,029㎥
 - 교량 공 : RC BOX교 1개소(B=5.0m, L=14.0m)
일체식 RC교 1개소(B=7.0m, L=14.0m)
 - 포장 공 : 아스콘포장 0.4a, 콘크리트포장 146㎥
 - 가설 도로공 : 흙쌓기 57㎥, PC암거(2.0x2.0x1련) 28m
 - 부대 공 : 돌담쌓기(뒷길이25cm) 187㎥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869	697	△172	△19.8

III 주요 심사 내용

-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9.6%→10.0%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의 1.81%+3,294천원→2.48% 적용
- 전석쌓기 인력비빔 타설 단가 제외
 - 전석쌓기 품에 채움 콘크리트타설 품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계상된 인력비빔타설 단가 제외
- 조립식 PC암거 설치 단가 조정

- 가도 배수시설로서 현장실정 및 용도에 맞게 강선인장, 수팽창성 고무지수재, 수밀코킹 품(단가) 제외
- PE웬스 설치 단가 조정
 - 가도에 임시 사용자재로 손율(3개월) 적용 단가 재 산정
- 차도용 난간설치 단가 조정
 - 현장설치도 관급자재로 자재대에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계상된 난간설치비 제외
- 조립식 가설사무실 단가 조정
 - 조립식(샌드위치패널) 가설 건축물 →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적용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탄성포장 2,621㎡
 - 식재공사 1식(해송 외 29종)
 - 부대공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1,652	1,421	△231	△13.9

III 주요 심사 내용

-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10.6% → 10.5% 적용
- 발담쌓기 단가 조정
 - 돌담 자재단가 조정 : 지역실정에 맞게 구입방법 조정
- 제주 관석포장 단가 조정
 -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시공방법에 맞게 보도블럭 포장 → 점판암 붙임 적용 단가 재 산정
- 해송이식 추가 적용
 - 기존 가로수(해송 92주) 제거수량을 이식수량(재활용)으로 적용
- 조경수(아왜나무, 먼나무) 식재단가 조정
 - 관내 조경수 유통단가 조사결과에 의한 수목 자재단가 조정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깨기 단가 조정

- 별도 폐기물 상차비가 적용되어 있어 포장깨기 품에 포함된 집토 및 적재품 제외

- 차선도색 단가 조정

- 주변 차선도색 방식에 맞게 융착식 → 상온식 적용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매립장 2단계 매립시설 확충사업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매립시설 확충 및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1,413	1,287	△126	△8.9

III 주요 심사 내용

-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81% + 3,294천원 → 2.48% 적용
- 흙깍기(암) 단가 조정
 - 지질조사 결과에 의한 암질 적용 단가 재 산정
 - 사토(암) 단가계산에 집토 및 적재 품이 포함되어 있어, 흙깍기(암) 단가계산에 적용된 집토단가 제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규모(100톤이상)이 상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분리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어 적용 제외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수로정비 L=1,769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1,581	1,307	△274	△17.3

III 주요 심사 내용

-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0.41% 적용
- 터파기(토사, 암) 수량 조정
 - 현장실정(구조물 규격과, 완제품 등) 반영 토목공사 설계지침 및 적산지침(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한 터파기 여유폭 40cm → 30cm 적용
- PC암거 접합 및 부설 단가 조정
 - PC암거(1.0 × 1.0, L=1,531m) 접합 및 부설은 건설표준품셈 중량 구조물 설치 품으로 단가 산정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흙관접합 및 부설 : D600 151.6m, D800 248.6m
D1000 138.5m, D1200 598.9m
PC암거(1.0*1.0) 133m, PC암거(1.5*1.5) 274m
조립식간이흙막이 : H=1.9~4.3 1,390.7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2,441	2,033	△408	△16.7

III 주요 심사 내용

- 굴삭기의 작업효율(E)을 모래와 점성토의 평균값으로 조정
- 조립식PC암거 설치단가 조정
 - 인장부분을 건설표준품셈 5-17(프런트재킹공법) 적용
- 흙관접합및부설(D800mm)단가 조정 : 건설표준품셈 적용
- 사각맨홀설치에 필요한 강관동바리의 수평연결재 삭제(설치높이 3.5m 초과시 적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반영(15%)
- 아스팔트 포장깨기 단가 조정
 - 연성포장으로서 작업능력 최대치 적용 $Q=5.9\text{m}^3/\text{hr}$
- 조립식간이흙막이 단가 조정

- 작업효율(E) 및 사이클 시간(cm)을 토공과 동일적용
- 보조기층운반 단가 조정
 - 운반장비(덤프트럭) 15.0TON → 24.0TON 적용
- 포장깨기와 상차가 같이 이루어지므로 폐기물상차비 삭제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 마을안길 (소로2-2호선) 확포장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L=311m, B=8~1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788	691	△97	△12.3

III 주요 심사 내용

-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10.0% → 9.7% 적용
 - 기타경비 : 직접공사비의 6.2% → 6.3% 적용
- 돌담혈기 : 기계+인력 적용 → 100% 기계사용 적용
- 석면슬레이트철거 : 특별인부 → 석면해체공 적용
- 토량환산계수 : 점질토 f=1.3 → 보통토 f=1.25 적용
- 미진동암파쇄 : 걷어내기 사이클타임 135도 선회 → 사이클타임 90도 선회 적용
- 빗물받이, 연결관 터파기, 교통표지판 터파기 : 포장층 미공제 → 포장층 공제 적용
- PE관 접합(D250~D300mm) : 수도용융착품 → 하수용융착품
- 우수관부설(D800mm) : 크레인 15ton → 크레인 10ton 적용
- 옹벽 레미콘타설 : 인력 타설 → 펌프카 타설 적용
- 옹벽 철근가공조립 : 철근가공조립(복잡 → 보통)
- 옹벽 강관비계 : H=2.0m 미만 공제
- 옹벽 거푸집(합판4회 → 유로폼)

- 가설사무실 : 사무실 설치 2회 적용. → 사무실, 창고 각 설치 품 수정 적용
- 보조기층, 석분, 순환골재, 모래운반 : 덤프트럭 15ton → 덤프트럭 24ton 적용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관정 상부보호시설 정비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관정 상부보호시설 180개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330	295	△35	△10.6

III 주요 심사 내용

-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15%
- 콘크리트깨기 및 터파기 수량조정
 - 관정부수량과 콘크리트깨기수량이 중복됨에 따라 공제
-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골재 부설 및 다짐 단가조정
 - 현장여건에 맞게 기계 및 인력 비율 조정
- 모래구입운반 단가조정
 - 재료비 중복 계산으로 재료비 삭제
- 자재비 물가정보지 제공단가 반영(석분, 자갈)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광장 조성사업 ○○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생태하천정비 : 생태호안설치 4,314m², 보개량 및 어도설치
 - 생태조경시설 : 생태습지, 식재(10종) 1식, 친수공간조성 1식
 - 수질정화시설 : 수질정화시설 1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5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7,688	6,135	△1,553	△20.2

III 주요 심사 내용

-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5.5% → 6.0% 적용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2.0% → 15.0% 적용
- 호안기초 및 수질정화시설 레미콘타설 단가 조정
 - 현장실정에 맞게 인력타설을 펌프카타설로 조정
- 터파기 및 되메우기 단가 조정
 - 기계와 인력비율 조정(8:2 → 9:1), 토량환산계수 조정(L=1.25)
- 골재운반 단가 조정
 - 골재운반차량 조정(15ton → 24ton)
- 지정폐기물처리 별도 발주 및 건축물철거 수량 및 단가 조정
 - 지정폐기물처리는 별도발주 계획이므로 삭제
 - ○○○광장 지장물철거와 중복된 건축물철거 수량은 제외하고 건축물철거시 발생하는 고재대를 추가하여 단가 산정

- 아스팔트깨기 단가 조정
 - 연성포장이므로 작업능력을 $Q=5.9\text{m}^3/\text{hr}$ 로 조정
- 전석쌓기 단가 조정
 - 0.5m^3 이내로 적용된 단가를 0.2m^3 급으로 조정하여 재 산정
- 가물막이 단가 조정
 - 가물막이에 사용된 PP마대를 톤마대로 변경하고, 연계된 항목 삭제
(가성토, 가성비제거, THP관 설치)
- STS관 및 밸브 설치수량 및 단가 조정
 - 플랜트 기계설비공사 품을 일반기계설비공사 품으로 변경하여 수량
및 단가 조정
- 헛대 단가 조정
 - 헛대에 적용된 목재가공조립 보통구조(하)를 목구조체 설치 간단
품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
- 중기운반 및 공사현황판 단가 조정
 - 공사현황판은 기 발주된 ○○○공사와 중복되므로 삭제
- 자재단가 조정
 - 박리재, 맨홀사다리, 치즐 등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지구 도시개발사업 2차 부대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흙깎기 및 터파기 1,133㎡, 사토 1,034㎡, 지장물 철거 등
 - 표층포장 1,564㎡, 기층포장 1,115㎡, 과속방지턱 및 차선 등
 - 흙관 80m, 맨홀 2개소, 담장설치 1,050㎡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987	848	△139	△14.0

III 주요 심사 내용

-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1.81%+3,294,000)*1.2
→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2.48%)*1.2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노+경비의 0%
→ 0.41% 적용
- 토량환산계수 및 굴삭기 선회각도 조정
- 노임단가를 하반기도서노임으로 조정
- 미끄럼방지포장 및 자연석경계석을 관급자재로 조정
- 지장구조물철거 단가 조정
 - 철근구조물 고재처리비 반영 및 슬래브구조물 작업효율 조정
- 전석쌓기 단가 조정

- 0.5㎡ 이내로 적용된 단가를 0.3㎡급으로 조정하여 재 산정
- 옹벽거푸집 단가 조정
 - 합판거푸집을 유로폼으로 조정
- 철근가공 및 조립 단가 조정
 - 기구손료는 가공인부의 2%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구손료를 조정
- 방수공사 및 풀베기 등은 별도발주 공종으로 삭제
- 가설사무실 및 창고 단가 조정
 - 설치인건비 및 손율을 설치규격에 맞게 조정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골프장 조성사업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골프장 18홀, 연습용 3홀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809	680	△129	△15.9

III 주요 심사 내용

-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노+산출경비의 0.3% → 0.8% 적용
- 구조물깨기 및 포장깨기 단가 조정
 - 작업현장이 넓고 장애물이 없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므로 시간당 작업량(Q값) 상한치 적용
- U형측구 깨기에서 발생하는 스틸그레이팅 고재처리비 반영
- 그린-티에 적용되는 인조잔디를 작업효율 및 현지 여건에 맞게 떼붙임으로 조정
- 떼붙임 단가 조정
 - 현장내 재료소운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운반 제외, 꼬치제작 수량 1인1일 3,000개로 조정
- 수목이식 단가 조정
 - 건설표준품셈 적용 단가 재 산출
- 보조기층 및 순환골재 운반차량 조정(15ton → 24ton)

- 파컬러 및 옥외용벤치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조정
- 메쉬형울타리 설계도면에 맞게 수량조정

IV 착안 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적용 검토
-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등 과다 설계된 내역 검토

○○○○동글게 핵심지역 경계표시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역과 경계표시 돌담쌓기(0.8×0.5) L=7.1k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583	545	△38	△6.5

III 주요 심사 내용

- 원가계산제경비율 조정
 - 전문공사 경우 특수 및 기타 안전관리비로 적용토록 조정,
- 돌담 현장채집·운반 수량 조정
 - 장비와 인력 운반비율 현장실정에 맞게 조정결과 반영
 - 건설표준품셈에 맞게 돌담 단위중량 조정결과(m^3 당 2,950kg→2,226kg 적용)에 의한 단가 산출
 - 경계석 높이 보다 높게 콘크리트 타설 하도록 설계되어 경계석 높이 맞게 설계변경 함으로서 원감절감 되도록 조정

IV 착안 사항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이 적정성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
-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문화의 거리 경관 조성 사업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L=40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 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450	419	△31	△6.8

III 주요 심사 내용

- 설계서 누락, 오류 물량 조정
 - 철근가공조립 + 합판거푸집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설계내역에는 누락 되어 있으며, 또한 터파기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 수량을 공제하고, 되메우기 = 잔토처리 수량으로 반영하여야함에도 실제 시공물량 보다 과다 계산된 수량산출 조정.
- 관광안내센터 및 파고라 시설공사 제품과 제비율 조정
 - 잔디블럭, 제주석 시공에 대해서는 수량이 과다계산 되어 있고, 조명 시설과 사인공사에 대해서는 제비율이 중복 계산되어 조정

IV 착안 사항

- 도면, 시방서에 규격과 수량산출서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 녹지유평터 조성사업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4개구간 녹화 L=5.5k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 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455	399	△56	△12.3

III 주요 심사 내용

- 잔디식재(평떼) 노임 품 조정
 - '12년도 품셈에 의한 노임 품 적용되어 '13년도 품셈으로 조정
- 조경수목 단가 조정
 - 수목(녹나무 H4.0×R15) 자재단가를 실거래가격 견적에 의한 재 조 사단가 반영
- 임목폐기물 수량 및 단가 조정
 - 임목 크기에 따라 파쇄수량 및 단가적용의 과다 계산된 수량을 조정

IV 착안 사항

- 표준품셈 개정내용 또는 단서조항 숙지
-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 도시숲 (시민복지타운) 조성사업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아름다운 녹지쉼터로 쾌적한 도시공원조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 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515	465	△50	△9.7

III 주요 심사 내용

- 원가계산제경비율 조정
 - 전문공사 5억원 미만 경우 특수 및 기타 안전관리비로 적용토록 조정,
 - '12년도 품셈으로 조경 노임 품 적용되어 '13년도 품셈에 의한 노임 품 조정
- 현지에 맞는 공법으로 조정
 - 조경수목 식재구간 및 녹지조성 전체구간에 잔디(평떼)식재하도록 되어 조경수목 식재구간을 제외하고, 평떼에서 줄 떼로 조정
 - 경계석 높이 보다 높게 콘크리트 타설 하도록 설계되어 경계석 높이 맞게 설계변경 함으로서 원감절감 되도록 조정

IV 착안 사항

- 원가계산제비율 적용이 적정성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
-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2. 건축공사 분야

○○○ 객주터 재현사업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김만덕 나눔과 봉사의 실천정신을 역사교육장으로 활용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 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2,128	1,786	△342	△16.1

III 주요 심사 내용

- 원가계산제경비율 조정
 - 건설공사 5억~50억원 미만 공사 문화재공사 일 때 특수 및 기타건설에 적용하여야함에도 일반건설(갑)을 적용된 것을 조정
- 가설공사 덧집 공정 조정
 - 전통가옥 외부 수리용 덧집과 기초보호용 덧집 등 중복계산 되어 있고, 또한 강관비계에 일부자재 활용할 수 있어 실제 시공에 맞게 조정
- 석축 쌓기에 속 채움 및 자재 운반거리 조정
 - 속 채움 수량 및 모래 현장도착 가격임에도 운반거리 적용되어 이를 조정

IV 착안 사항

- 원가계산제비율 적용이 적정성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
-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수원지 생태복원사업 조경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생태복원하여 친환경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A=10,568㎡)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919	769	△149	△16.3

III 주요 심사 내용

- 안전관리비 제비율 조정
 - 전문공사(조경분야) 5억~50억원 미만 일 때에는 규정에 따라 재료비+직노=0.91%+1,647천원 적용도록 조정
- 현지에 맞는 공법으로 조정
 - 산책로 송이포장에서 친환경매트포장, 산책로 500m에 파고라(W5m×H3.3m) 8개소 제작설치에서 4개소로 조정, 전체 사업면적 10,566㎡ 중 산책로+조경면적을 공제한 6,018㎡를 초류종자파종조정,

IV 착안 사항

- 원가계산제비율 적용이 적정성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
-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 사적화 정비사업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문화유적지를 보존하여 역사교육장으로 활용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748	508	△240	△32.1

III 주요 심사 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공사기간 6개월 이하에 10.6% 적용된 것을 9.9%로, 안전관리비 전문공사에재
료비+직노×248%+3,294천원에서 재료비+0.91%+1,647천원으로 조정
- 현장 실정에 맞게 공법 조정
 - 유적지 내 잔디블럭+마사토포장에서 친환경매트로, 평면시공
4,477㎡에서 줄 때로 공법변경
 - 터파기를 과도하게 할 때 유적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절토계획을 축
소하였고, 토사운반거리 10km에서 토사필요 현장에 조달

IV 착안 사항

- 원가계산제비율 적용이 적정성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
-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공중화장실을 정비하여 성산일출봉을 찾는 도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시설 제공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677	550	△127	△18.8

III 주요 심사 내용

- 안전관리비 조정
 - 안전관리비 전문공사에 재료비+직노×2.48%+3,294천원에서 재료비+직노×1.24%으로 변경
- 현지 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조정
 - 기존 건물 바닥 기초콘크리트 철거계획에서 기존콘크리트 위 보강 시공도록 하였고, 지붕 제주석 50% 철거한 후 재시공하도록 된 것을 현재 훼손되어 있는 부분만 보수하도록 변경

IV 착안 사항

- 원가계산제비율 적용이 적정성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
-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V 시공 현장 모습



○○○ 성곽 보수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유구조사로 치성확인 및 성곽 L=55m 복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499	417	△82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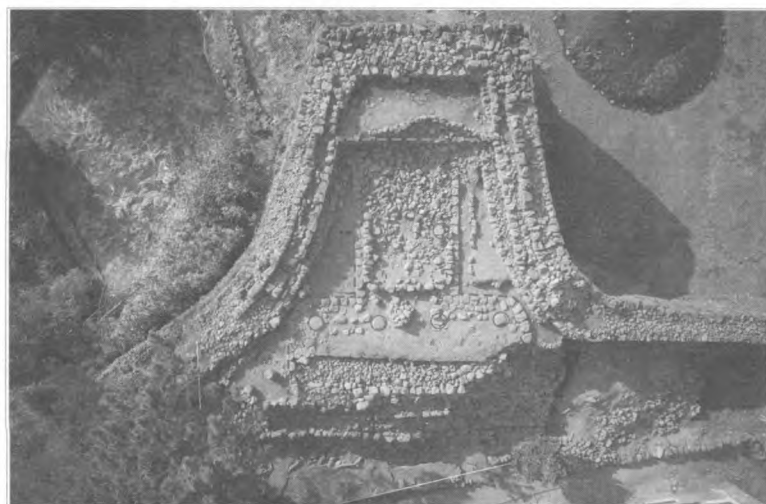
III 주요 심사 내용

- 표준품셈에 따른 노임 품 조정
 - 문화재 보수·복원에 뒷정리, 건치돌이나 마름돌쌓기에 석공사 편수를 산정함으로써 공사비가 50% 증액되어 이를 조정하였음
- 현장에 맞는 공법으로 조정
 - 유구조사(시굴조사)를 민간주택까지 포함된 사유 토지 부분을 제외하여 유구조사 하도록 변경

IV 착안 사항

- 표준품셈 적용이 적정성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
-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V 시공 현장 모습



○○○ 보존회관 건립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과 명예 선양 등 예우의 측면에서 다목적회관 건립하여 여가활동 공간제공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748	667	△81	△10.8

III 주요 심사 내용

- 원가계산제경비 제비율 조정
 - 간접노무비의 50억원 미만, 공사기간 6개월 이하에 6%에서 8.9%로, 일반관리비 3%에서 6%로 조정
- 현장에 맞는 공법으로 조정
 - 지하층에 저수조를 위한 시설하고 있어 옥상 층으로 조정, 토사운반거리 10km에서 5km로 변경, 레미콘자재 중복계상된 것을 조정

IV 착안 사항

- 원가계산제경비 적용이 적정성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
-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 클럽하우스 신축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해양레저활성화 및 요트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792	690	△102	△12.9

III 주요 심사 내용

- 건설자재단가 조정
 - 제주판석(T=30mm)1㎡ 당 70,000원에서 42,000원로, 모래 1㎡ 당 28,000원에서 21,000원으로 조정, 또한 건설자재 등 운반거리 20km에서 10km로 조정
- 현장에 맞는 공법으로 조정
 - 건물 외 벽체 마감자재가 태풍내습 시에 훼손될 우려가 있어 태풍에 견고한 제주판석(T=30mm) 공법으로 변경함으로써 공사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조정

IV 착안 사항

- 표준품셈 적용이 적정성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
-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경기장 애향운동장 리노베이션 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역주민의 건강 및 자생체육단체 육성, 지역주민상호교류의 활성화, 생활체육활동 공간제공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768	654	△114	△14.9

III 주요 심사 내용

- 표준품셈에 따른 노임 품 조정
 - 타일공사 '13. 1. 1. 표준품셈이 개정되어 있음에도 표준품셈에 맞지 않은 노임 품을 품에 맞게 조정
- 현장에 맞는 공법으로 조정
 - 노후된 액체방수를 철거한 이후 콘크리트 위 우레탄방수 위 보호물 탈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액체방수 공법으로 조정
 - 관람석 케노피 지붕 알루미늄판넬에서 아연도강판으로 변경

IV 착안 사항

- 표준품셈 적용이 적정성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
-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 ○○마을 관아 복원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현 관아 1동 복원하여 역사교육장으로 활용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336	311	△25	△7.44

III 주요 심사 내용

- 표준품셈에 의한 노임 품 및 예정공정표에 따라 손료 조정
 - 문화재 보수·복원에 2012년 노임 품 적용을 '13년 노임 품 적용
 - 외부줄비계, 가설덧집, 내부비계,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 등 손율의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
- 공법 및 일반자재에서 관급자재로 조정
 - 가설덧집(지붕) 골함석과 기초 우장막 설치가 중복되어 우장막 설치로 조정, 목재, 기와, 흙 등 인력운반에서 기계운반으로 조정

IV 착안 사항

- 표준품셈 적용이 적정성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
-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3. 전기·통신·소방공사 분야

○○글 전기설비 정비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경관조명 교체 정비공사 1식
 - 보안등 교체 정비공사 1식
 - 전력 간선 은폐 설치공사 1식
 - 관리실 및 사무실 LED 교체공사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379	308	△71	△18.7

III 주요 심사 내용

- 노임단가를 2013년 하반기 단가를 적용하고 지세별 할증(불량 25%)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굴내 작업임을 감안 위험 할증률(터널내 작업과 유사한 작업 15%)로 조정
- 케이블 포설에 따른 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포설 품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중 포설품을 적용하여 조정
- 전기공사 품을 산정함에 있어 조명, 전선관 및 접속기구 설치 개별 품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일 반복공정(90%)으로 적용하여 조정
- 조명기구는 기존시설 철거후 신설조명으로 교체인바, 교체시 기존조명을 재사용 철거품(50%)을 적용하고 있어 철거품(30%)으로 수정 적용

- LED램프교체는 기존 3과장 형광등을 LED등으로 램프만 교체하는 공정으로 등기구 재사용 철거후 설치품으로 적용되어 램프 교체 품으로 수정 적용
- 전력간선 은폐를 위한 방수천(듀스포) 설치 공정에 적용품을 옥내잡공사(박스커버) 품을 적용하고 있어 케이블 매설 표시 시트설치 품에 시트 규격에 따른 효율과 추가되는 공정(은폐 및 관로 정리 등) 효율을 추가하여 수정 적용
- 기존 배관 배선 점검 공정에 적용품을 가로등 누전회로 탐사품을 적용하고 있어 시행 목적상 100m간격으로 표시찰을 설치하고 있어 표시찰 설치구간에 대한 지중 접속함 점검 품셈으로 수정 적용

IV 착안 사항

- 2013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3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강구

○○지구 도시개발사업 신호등 설치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교차로 8개소 신호등 설치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510	391	△119	△23.3

III 주요 심사 내용

- 배관 배선 및 케이블 설치에 따른 공량을 다중포설품으로 반영하여 조정
- 시공시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케이블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수정
- 차량등 철주 및 보행등철주 설치를 교통신호등 기계화시공 설치로 조정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에 의거 사급자재(LED신호등, 신호등제어기)의 단가산출은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여 관급자재로 변경조정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136(2013. 1. 24)호와 관경 관급 대상 자재 분리 발주 여부 대상 관급 적용

IV 착안 사항

- 2013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3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치유의 숲 조성사업(전기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력 인입 설비공사 1식
 - 힐링센터 전력간선 설비공사 1식
 - 옥외 보안등 설비공사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442	348	△94	△21.33

III 주요 심사 내용

- 원가계산을 산정함에 있어 '12년도 하반기 조달청 발표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13년 상반기 조달청 발표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케이블 포설에 따른 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포설 품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중 포설품을 적용하여 조정
- 전기공사 품을 산정함에 있어 전선관 및 접속기구설치 개별 품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 반복공정으로 적용하여 조정
- 계량기함은 규격 변경 및 도내 전문제작업체에 조사된 가격 반영 조정
- PE 수공 1호는 도내 유통업체에 조사된 가격 중 최저가격 반영 조정
- 옥외 보안등(목재)는 생산 유통업체에 조사된 가격 중 최저가격 반영 조정
- 보안등 기초를 완성품하여 설계에 반영하면서 운반비 및 설치비가 누락

되어 있어 현장 설치품으로 일위대가 수정 반영

- 분전반 및 AVR 시설은 힐링센터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여야 하는바, 금차 공사에서 제외하여 조정
 - 분전반(LP-M, LP-P2), AVR(전압자동조정기), 접지공사 1식
 - 건축내 전선 배관(HI PVC 104C) 및 케이블 40m 1식

IV 착안 사항

- 2013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3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설사업 전기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증설사업 1식(전기공사, 제어계측공사)
 - 전력간선설비, 동력설비, 케이블트레이, 건축전기 등
 - 수변전, 통신간선, 유입펌프장, 반응조 설비 2단계 등 개보수사업 1식
 - 전력간선설비, 동력설비, 케이블트레이 설치 등
 - 수변전설비, 통신간선설비, 유입펌프장 설비, 반응조설비 1단계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1,485	1,379	△106	△7.13

III 주요 심사 내용

- 원가계산을 산정함에 있어 2012년도 하반기 조달청 발표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
- 노임단가를 2012년 상반기 단가로 적용하고 있어, 2013년 노임단가로 반영하여 조정
-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 반영 적용하고 상반기 전기공사 실적 공사비 감안 적용 일위대가 수정 반영
- 케이블 포설에 따른 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포설 품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중 포설품을 적용하여 조정

- 전기공사 품을 산정함에 있어 전선관 및 접속기구설치 개별 품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일 반복공정(90%)으로 적용하여 조정

IV 착안 사항

- 2013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3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성판악지구) 고지대 전기시설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기설비공사 1식
 - 전선관 및 케이블설치 5.026km
 - 수배전반시설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795	656	△139	△17.44

III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을 산정함에 있어 2013년도 하반기 조달청 발표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
 - 일반관리비(5.5% ⇒ 6.0%) 조정, 이윤(13.237% ⇒ 15.0%) 조정
-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 반영 등 일위대가 수정 반영
 - 후렉시블전선관 : 표준품셈 5-1적용(내선설비) ⇒ 표준품셈 4-29(배전설비)로 조정 (내선전공 ⇒ 배전전공, 보통인부 적용)
- 전기공사 품을 산정함에 있어 전선관 및 접속기구설치 개별 품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일 반복공정(90%)으로 적용하여 조정
- 표준품셈 1-26 지세별 할증 30% 적용
 - 지세할증(불량) 25% 적용 ⇒ 고도, 통행조건(매우불량) 등을 감안 30.0%로 조정

IV

착안사항

- 2013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3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봉 친환경 LED 조명설비 교체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봉 등반로 친환경 LED 조명설비 교체 공사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410	358	△52	△12.65

III 주요 심사 내용

- 원가계산을 산정함에 있어 2013년도 상반기 조달청 발표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건축)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하고 있어 공정등을 감안하여 2013년 상반기 토목공사(조경)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간접 노무비 : 8.9% ⇒ 9.9%로 조정
 - 기 타 경 비 : 5.4% ⇒ 6.1%로 조정
- 케이블 포설에 따른 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포설 품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중 포설품을 적용하여 조정
- 전기공사 품을 산정함에 있어 전선관 및 접속기구설치 개별 품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일 반복공정으로 적용하여 조정
- 전체 노무임을 적용함에 있어 도서할증(15%)과 지세별 할증(매우불량 50%)을 적용하고 있어 본 경우에는 전체구간에 대하여 지세 할증 적용이 불가하여, ○○봉 정상 밑 일부구간(도면 7, 8 구간)에 대하여

부지 경사각과 통행조건 등을 감안 지세별 할증(불량 25%) 적용

- 사급자재인 석재 블라드(제주석)에 대하여 지역내 전문제작업체에 추가 견적 의뢰하여 조사된 가격 중 최저가격 반영

IV 착안 사항

- 2013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3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 ○○교 경관 조명공사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1식
 - 물고기 및 참굴비 경관조명 1식
 - ○○○○ 경관조명 1식
 - 하르방 태양광 블라드 조명 설치 1식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391	355	△36	△9.21

III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을 산정함에 있어 2013년도 상반기 조달청 발표 토목공사(조경)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2013년 상반기 건축·산업환경 설비공사(산업설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 반영 등 일위대가 수정 반영
- 전기공사 품을 산정함에 있어 전선관 및 접속기구 설치 개별 품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일 반복공정(90%)으로 적용하여 조정
-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과견시)할증은 도서지역별 상황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지세 할증을 적용 하도록 한 것은 선박 시간에 맞추어 도서에 들어가서 작업하다 선박 시간에 맞추어 작업을 완료하고 본토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으로 작업능률 저하에 따라 적용하는 할증개념인바, 본 경우에는

지세 할증 적용 불가.

- 인건비 조정 : 2013년 상반기 노임단가에 도서할증(15%) 적용

IV 착안사항

- 2013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3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V 사업 시행 전후 모습



4. 기술용역 분야

○○○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전면책임관리 용역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지의 증진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2,701	2,309	△392	△14.5

III 주요 심사내용

- 직접인건비(감리원수) 조정
 - 총공사비에 맞게 감리원수를 산정하지 총공사비로 감리원수 조정
 - 소방법령에 따르면 상주 공사감리를 제외되어 감리원수 재조정
- 제경비 제경비율 조정
 - 직접인건비의 제경비와 기술료에 대한 제경비율을 감하여 조정
- 차량운행비 조정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맞게 승합차 →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승용차 적용하도록 재 산정결과 반영

IV 착안사항

- 2013 건설공사 감리대가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여부
- 계약목적에 따라서 관계법령 적용여부 적정성 등

‘1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재해위험지구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침수지구(4개소) : 배수로정비 L=10.89km, 저류지 1식
 - 붕괴지구(2개소) : 절개지정비 A=4,960㎡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1,121	887	△234	△20.9

III 주요 심사내용

-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맞게 중심선 측량 및 용지측량비 금액 조정
 - 사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의한 중심선측량 적용 제외
 - 지형·현황측량비에 지상현황(용지)측량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계상된 용지측량비를 제외하고 용지조서 작성비용 반영
- 시추조사에 따른 지층구조 및 실내시험 항목·단가 조정
 - 지층구조(자갈층, 연암층) 현장실정에 맞게 조정결과 반영
 - 항목별 실내시험비에 대하여 한국건설표준연구원 시험업무안내 수수료 적용 단가 재 산출결과 반영

IV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면 책임감리 용역 1식
 - 하수관거정비 L=31.4km(배수설비 2,601개소)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1,778	1,461	△317	△17.9

III 주요 심사내용

- 직접인건비(감리원수) 조정
 - 감리대상 총공사비 적용금액을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맞게 계약심사 결과에 의한 공사비를 적용 직접인건비 재 산정 결과 반영
- 직접경비 주재비 조정
 - 상주감리원의 주재비는 감리대상 현장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로서 감리원이 출퇴근이 어려워 현장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에 반영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공동도급 30%)만큼 주재비 조정

IV 착안사항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13 ○○시 지방하천(○○외 12개하천) 통합 전면책임관리용역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통합 전면책임관리 용역 1식
 - ○○천 외 12개 하천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994	881	△113	△11.3

III 주요 심사내용

- 제경비 및 기술표 조정
 - 사업성격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 적용요율 하한치 적용
- 주재비 조정
 - 상주감리원의 주재비는 감리대상 현장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로서 감리원이 출퇴근이 어려워 현장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에 반영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공동도급 30%)만큼 주재비 조정
- 차량운행비 조정 : 엑센트 차량 적용
 - 공사비 1,000억 미만 : 승용차(배기량 2,000cc이하)1대

IV 착안사항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14 ○○○○개선평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재해위험개선평지구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360	322	△38	△10.5

III 주요 심사 내용

- 건설공사 표준품셈(측량)에 맞게 단가 재 산출
 - 종단, 횡단측량 추가 적용
 - 사업량에 맞게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지상현황측량에 대한 작업량비 조정결과 반영
- 시추조사에 따른 지층구조 및 실내시험 항목·단가 조정
 - 지층구조(자갈층, 연암층) 현장실정에 맞게 조정결과 반영
 - 항목별 실내시험비에 대하여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적용

IV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중블록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1식,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599	556	△43	△7.2

III 주요 심사 내용

-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작성 단가조정
 - 기초자료 수집 및 작업준비는 기 완료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자료를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직접인건비 조정
 - 관망도(CAD) 및 조서작성(신규), 관망도(CAD)보완 작성(기존관망도 수정)은 동 지역의 경우 GIS구축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수량 조정
- 관망 정비계획(현장조사 및 계획수립) 단가 조정
 - 부단수 내시경은 블록당 1개소로 조정
- 부가가치세 조정
 - 손해배상보험료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므로 부가세포함 산정

IV 착안사항

-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5. 일반·학술용역 분야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시공감리 용역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00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시공감리 용역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767	724	△43	△5.61

III 주요 심사내용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9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경비 조정
 - 제경비 제비율이 90%로 적용된 바, 직접공사비의 110~120%로 조정
- 감리원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감리 목적 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손해배상보험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제외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92호)에서 정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수 적용
 - 감리원수 45.25인(상주 36.2, 기술지원 9.05) ⇒ 감리원수 40.83인(상주 32.66, 기술지원 8.17)로 조정
- 건축·토목, 전기 등 공사별 계약심사 결과에 의한 공사비 반영

IV 착안사항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향몽유적 내성지 발굴조사 용역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내성지 발굴조사를 통한 ○○○○ 내성지의 중심 건물지와 중요 시설물의 배치를 파악하고 건물지의 구조와 성격을 밝혀 구체적인 기초 자료 확보 후 내성지 정비·복원사업과 연계 추진
 - 2,000㎡에 대한 내성지 발굴조사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300	266	△34	△44.4

III 주요 심사내용

- 조사보조원 참여인원 조정(2인→1인)에 따른 인건비 반영
- 직접인건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및 학술료 조정 반영
- 수송비, 임차료, 유물정리비 등 견적서 내용과 상이한 금액 조정 반영
- 직접경비 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정 반영
- 용역수행 내용에 따라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IV 착안사항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3항, 시행규칙 제37조 규정 준수

○○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버스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328	309	△19	△5.74

III 주요 심사내용

- 감리원수 조정 : 사업관리용역 인건비의 경우 연구원들의 직책 및 역할에 맞게 참여율 및 인건비 산출 조정
 - ※ 투입인원 산정은 최근 전국에서 발주된 유사 사업에 대한 투입인력의 평균 투입인력(27.9인)과 발주부서 의견을 통한 추가인원(2.3인) 배치
- 회의비(자문비 및 운영비) 중 공기 등을 감안 횟수 조정
- 교통통신비 중 우편료 2만원/월 ⇒ 우체국택배 4천원/월로 조정
- 사전사후 평가 경우 전산처리비 중 설문지 정리 및 Cording 인원 일 참여 일수 조정

IV 착안사항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6. 물품제조·구매 분야

○○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가로등 교체사업 가로등 주 제작 구매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가로등 주 9m, 1등용 : 45주(인도용 보조암 포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82	60	△22	△27.06

III 주요 심사내용

- 누락된 인도용 보조암 제작물량 포함 수정 조정
- 용접 재료비 산출관련 표준품셈 잡철물 제작 수량 적용
- 분체도장 재료비 산출관련 표준품셈 페인트칠(뿔칠 2회) 수량 적용
- 용융아연도금 재료비 산출관련 표준품셈 제품 표면처리 수량 적용
- 제조경비 산출을 위하여 가격법(원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은행 발표 2010년, 2011년 기업경영분석 자료[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를 기초로 2개년 평균 값 적용
(경비 비율 제작원가의 10.9% ⇒ 제작원가의 8.33% 적용)

IV 착안사항

- 2013년도 전기표준품셈,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3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시 동지역(○○공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측제어설비 제조 구매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제주하수처리장 감시제어시;스텝 개량1식
- 도두 소처리분구 맨홀펌프장 TM/TC 5개소 제작 설치
- 도두 소처리분구 자가배수펌프장 LOP 12개소 제작 설치
- 유지관리 공구 및 예비품 1식
- 시험 및 시운전, 교육훈련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240	211	△29	△12.11

III 주요 심사내용

- 제조원가계산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4호(2011. 9. 14) 규정에 의거 제비율 적용
- 직접노무비는 기본급과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기본급 단가 외, 상여금 200%를 적용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제 34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에 의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산정 포함 반영
- 일반관리비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조립금속제품 기계정비의 제조·구매 비율 적용 : 6.74% ⇒ 7%로 조정 적용
- 경비 산출근거가 없어 5.09% ⇒ 0.0%로 조정 적용
- 자재 단가는 도내 전문제작업체에 조사된 가격 중 최저가격 반영 조정

- 공량산출함에 있어 완성품에 대한 조립 공정에 대하여 배선공 ⇒ 부품조립공, 이변배선 공정에 대하여 강전기계조립공 ⇒ 배선공으로 조정 적용
- 시험 및 시운전 투입인력은 지방서상 전체 9개소에 2인 5일인바, 도두분구 5개소에 대한 인력투입(2인 2.7일)으로 조정
- 교육훈련중 공장교육은 지방서상 포함되지 않아 삭제하고 현장교육은 전체 9개소에 2인 3일인바 도두분구 5개소에 대한 인력투입(2인 1.6일)으로 조정

IV 착안사항

- 2013년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
- 2013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13년 축우 급여용 배합사료 구입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어린송아지용 배합사료 25kg 222포 외 6품목 9,180포 구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136	123	△13	△9.83

III 주요 심사내용

- 물품 구매의 가격조사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발주부서에서 업체 견적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한 산출기초조사서의 산출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조정 반영

IV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시중에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발주부서에서 조사한 가격 대비 최저가격 적용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HD ENG 촬영장비 및 편집시스템 구매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HD ENG 캠코더 등 29종 구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141	130	△11	△7.52

III 주요 심사내용

- 물품 구매의 가격조사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발주부서에서 사전 물가조사 하여 반영된 견적가격과 심사부서에서 조사된 견적가격을 품목별 비교, 가격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최저가격으로 조정 반영

IV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시중에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발주부서에서 조사한 가격 대비 최저가격 적용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13년 ○○○○○○ 액상정액 제조용 희석제(분말) 구입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돼지 액상정액 제조용 희석제(분말) 1,000포(10ℓ용/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66	46	△20	△30.3

III 주요 심사내용

- 물품 구매의 가격조사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발주부서에서 사전 물가조사 하여 반영된 견적가격과 심사부서에서 조사된 견적가격을 품목별 비교, 가격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최저가격으로 조정 반영

IV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시중에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발주부서에서 조사한 가격 대비 최저가격 적용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천연보호구역 외래식물 반입금지용 안전에어컨 구입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안전에어컨(3.00*1.30*1.00m) 2개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37	27	△10	△26.4

III 주요 심사내용

- 물품 구매의 가격조사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발주부서에서 사전 물가조사 하여 반영된 견적가격과 심사부서에서 조사된 견적가격을 품목별 비교, 가격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최저가격으로 조정

IV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시중에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발주부서에서 조사한 가격 대비 최저가격 적용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7. 인쇄물 분야

『0000 자연경관 백서』 제작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인쇄부수 : 2,000부(16절, 550면)
 - 용지 : 표지(하드카바), 본문(아트지 120 g, 미색지 100 g), 면지(레자크지 150 g)
 - 인쇄방법 : 화보 4도, 본문 1도, 옵셋인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38	33	△5	△13.1

III 주요 심사내용

-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용지대, 조판대, 인쇄비, 제본비) 조정 반영
- 인쇄비 저장: 인쇄통수에 따른 기준단가 적용 조정
- 잘못 적용된 제본비 수량 조정 (양장 제본 1,000권 ⇒ 2,000권)
- 일반관리비 및 이윤 조정 반영

IV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적용

『0000 000·0000 자연경관 제주』 한·영 화보집 제작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인쇄부수 : 1,000부(10절, 178면)
 - 용지 : 표지(하드카바), 표지(레자크지 150 g), 내지(아트지 180 g)
 - 인쇄방법 : 표지 4도, 본문 4도, 옵셋인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36	31	△5	△13.9

III 주요 심사내용

-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용지대, 조판대, 인쇄비, 제본비) 조정 반영
- 인쇄비 저장: 인쇄통수에 따른 기준단가 적용 조정
- 잘못 적용된 쇼핑백 수량 조정 (1,300개 ⇒ 1,000개)
- 번역료는 기번역 된 자료 활용 등을 감안 전체 번역료의 30% 반영 조정
- 일반관리비 및 이윤 조정 반영

IV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적용

00000 소장유물 도록 제작

I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인쇄부수 : 2,000부(국문 1,500부, 영문 500부), 10절 324면
 - 용지 : 표지(랑데뷰지 240 g), 본문(내지 랑데뷰지 130 g, 간지 매직 카라 120 g)
 - 인쇄방법 : 칼라, 옵셋인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금액	조정율(%)
50	47	△3	△6.45

III 주요 심사내용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 조정 반영
 - 과다계상된 용지대, 인쇄비 조정 반영
- 경비 조정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조정 반영

IV 착안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적용

IV 부 록

순 서

1.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2 - 1. 예정가격 작성 요령
 - 2 - 2. 계약심사 운영 요령
3. 물품제조원가 조사 및 작성 기준
4. 계약심사관련 인터넷 사이트

1.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10. 6. 3 예규 제35호
일부개정 2013. 12. 11. 예규 제4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1.>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도본청의 과·담당관

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도의회사무처

라. 행정시

마. 도 지방공기업

바. 도 출연기관(단,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호와 같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 사업으로 한정하고, 요청을 받은 자체사업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종합공사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소방시설공사
 - 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
2.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액 되거나 2회 이상 설계변경으로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증액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4.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종합공사(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경우. 단,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율이 30% 미만 사업에 한정한다.
 2.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한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예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5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등 전문공사의 경우는 3억원 미만에 한정한다.

나. 2억원 미만의 용역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3. 조달청에 직접 계약 요청하여 발주하는 사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5.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구매계약인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1명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할 경우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

8.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9.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10. 그 밖에 사업의 특성상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판단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7호 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④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

용을 변경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1.>

제8조(사후관리) ①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올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3호,2013.12.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발 주 처	· 당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계약심사 요청서 ,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지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파일 및 도면) 4. 품셈에 대한 내역서 및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5.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실시설계용역보고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발신명의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용역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2. 비목별 기초계산서 3.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4. 인채물산출 기초조사서(인채물이 있는 경우) 5. 기타 참고자료(과업지시서, 계획서, 견적서 등) ※ 모든 제출서류는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				

발신명의	
------	--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서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뒷면)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적용단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o o o 과장 성명 (인)

제조원가계산서

(뒷면)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단위	산 출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수 량	단 가	금 액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o o o 과장 성명 (인)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상호 :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격 : 절(mm × mm) 2. 수량 : 3. 면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뒷면)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o o o 과장 성명 (인)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뒷면)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 료'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 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 름출력비'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 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o o o 과장 성명 (인)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공사개요				
설 계 자	상 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1.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4.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발신명의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1. 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 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 (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 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

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

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 안에서 7개, $0\% \sim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 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전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

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1)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 2)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 3)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 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진 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 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 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 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 하여야 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회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1) 기본급 : 「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

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연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공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공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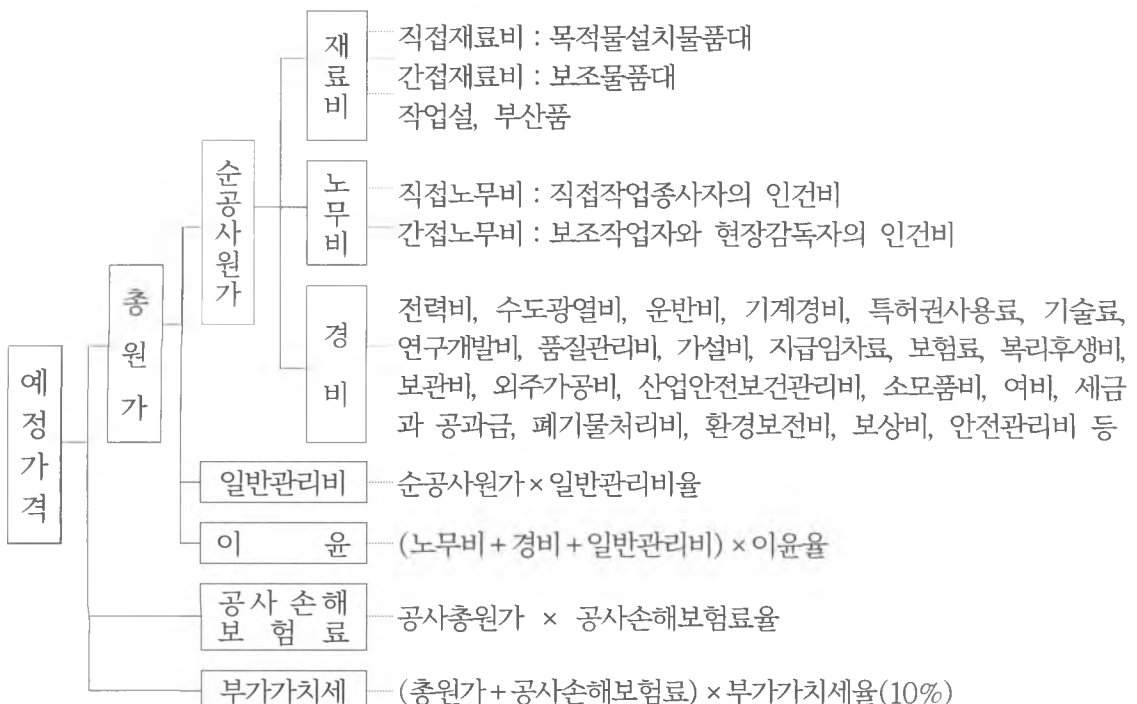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1)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

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나)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다)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라)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3)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14.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15.0	
	300억 원 이상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연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험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그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 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 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 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 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 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 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안전행정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 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text{직접공사비} = \text{수량} \times \text{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 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 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 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포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포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포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포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포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

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3년 기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980,044원
연 구 원	월 2,285,056원
연구보조원	월 1,527,485원
보 조 원	월 1,145,653원

-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주2) 위 단가는 2013년도 기준단가이며, 2014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위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 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 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 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〇〇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〇〇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만·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〇〇사· 도 경리관 귀하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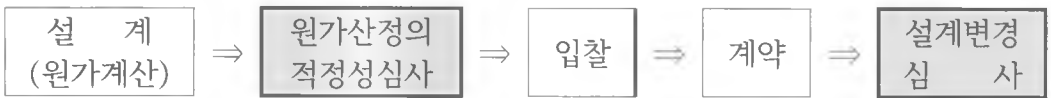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2-2. 계약심사 운영 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 5) 가격정보,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시·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나)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라)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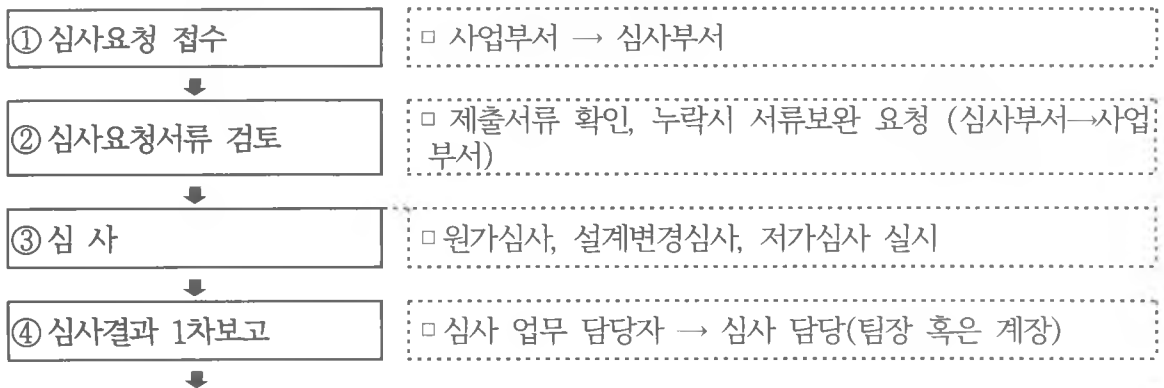
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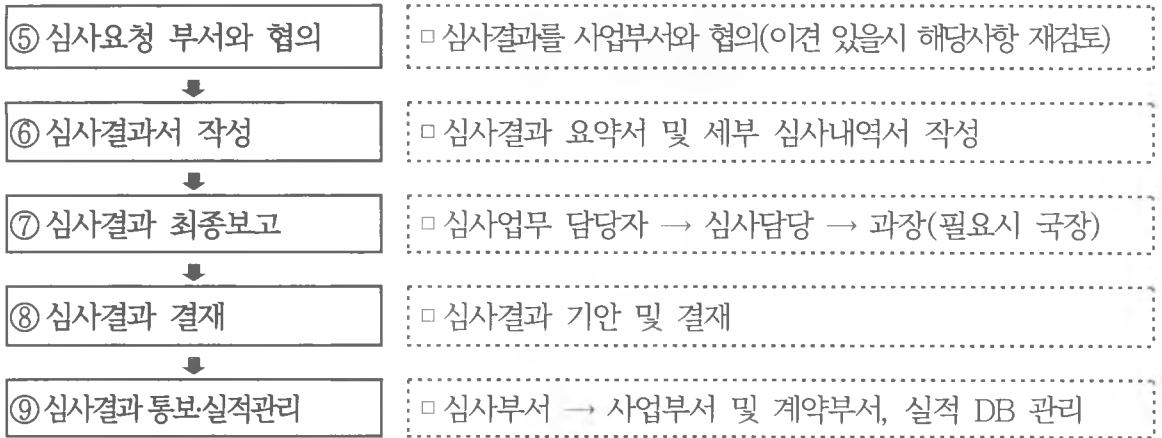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무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2)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5)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 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 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축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산출기초조사서
-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

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 원(시·군·구는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총괄담당)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내역화일 확인 □ 제출서류 누락시 사업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③ 심 사	□ 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정 등)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전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 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 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횡수에 제한 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한 경우로 한다.
-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 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사·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바·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륜 : - %

☐ 주요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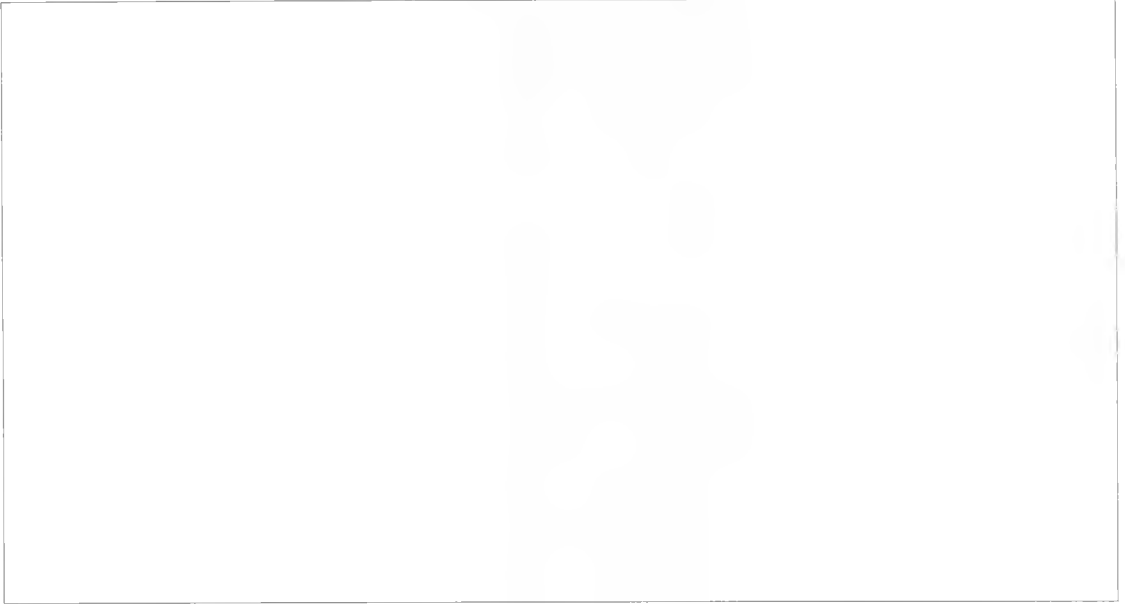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 공종)
-
-

☐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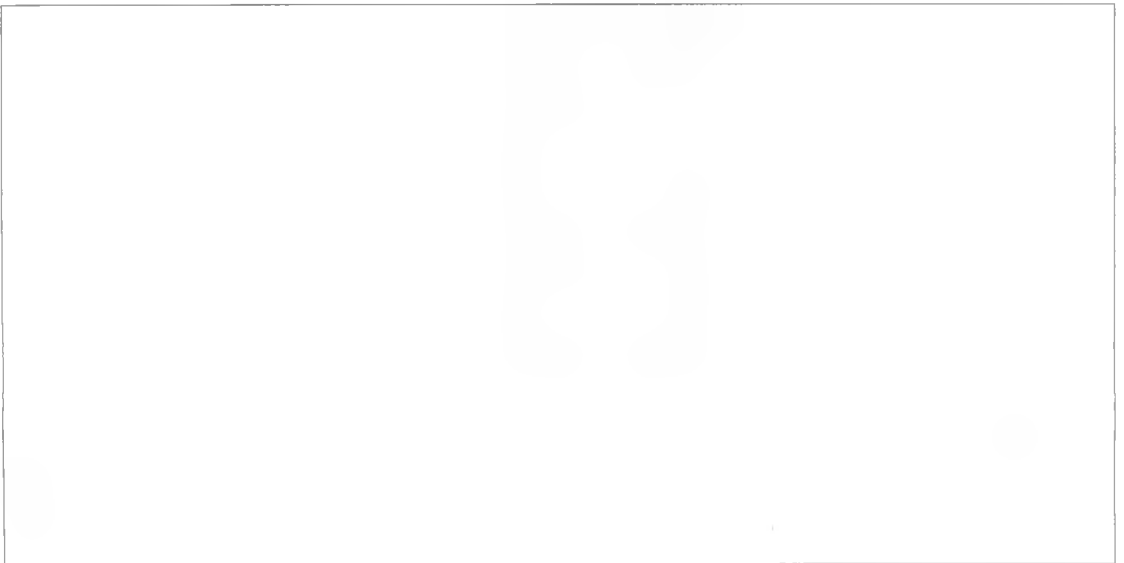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		협조				
접수일자						

용역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성자	· 담당부서 : · 작성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심사결과 요약서

용역명 :

(단위 : 원)

구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요청(심사)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경 비				
		여 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 타 경 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주요 심사내용

- ☐ 용역명 :
-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 요청기관 : ○ 용역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감액 : 천원
 - 절감률 :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 공종)
 -
 -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물품 원가심사-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	
접수일자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illegible]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2〉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신자		협조				
접수						
접수일자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신자		협조				
접수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쇄비			
제본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신자		협조				
접수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그 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인)

과장

(인)

주요 심사내용

☐ 건 명 :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 금액	
계약방법	

☐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시행일자						
수 신 자		협 조				
접 수						
접수일자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발신명의	
------	--

3. '13 물품 제조구입에 따른 제조원가 조사 및 작성 기준

물품분야 원가심사는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 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하여야함

I 원가조사 및 기준

- 물품 제조 구매 건에 대한 원가 조사는 지방계약제도 관계 법령, 국가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제도 관련 예규에 따라 원가를 산출 제시하여 예정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일부 물품 제조 구매시 제조원가 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조달청 계약시 활용 프로그램 출력물, 견적서(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로 제조원가를 작성하고 있어 비목별 가격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에 어려움
-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자료를 기초로 분석 조사하여 근거 마련

II 원가조사 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사업 범위 외 사업으로 자체 입찰을 통한 물품 제조·구매사업의 경우
 - 도로 및 도시개발사업시 가로등·보안등 등기구 물품 제조 구매
 - 선박 수리 용역사업¹⁾
 - 수배전반 물품제조 구매
- ※ 일부 사업부서에서 관급자재(수배전반 물품 제조) 조달 구매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인한 향후 유지 관리에 어려움 등의 사유로 자체 입찰 구매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바,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사유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1) 「어업 지도선 삼다호 수리용역에 따른 원가계산 연구 보고서」 참조 -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업체 인 (재)한 국가치경경제연구원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²⁾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 제조원가 작성시 원가 비목별 산정 기준은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내용중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지표 제조업분야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
 - 수·배전반 제작 구매 ⇒ C28. 전기장비 분야 적용
 - 가로등·보안등 등기구 제작 구매 ⇒ C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분야 적용
 - 선박 수리 용역 ⇒ C31. 선박 및 보트건조업 분야 적용
- 재료비 :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하고 직접재료비는 대상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직접재료를 계상하고 간접재료비는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고 보조적으로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를 계상
 - 직접재료비는 재료 소요량에 해당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간접재료비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부담액으로서 직접산출방법과 간접산출방법 등이 있으며 당해 원가조사에서는 간접산출방법으로 계산
 - ※ 선박수리용역에 대하여 「어업 지도선 살다호 수리용역에 따른 원가계산 연구 보고서」 내용 적용 간접재료비는 표준품셈 상 직접재료비의 2~5%를 계상할 수 있어 3% 적용
- 노무비 :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하고 직접노무비는 제조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임금을 계상하고 간접노무비는 제조 현장에서 직접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보조적으로 투입되는 자의 임금을 계상
 - 직접노무비는 당해제품 제작을 완수하기 위하여 작업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자의 노임으로 부문별 공정별 인원배치 및 생산량을 조사하여 생산능력에 따른 직종별 소요공수를 산출 후 그에 임율³⁾을 적용하여 산출.
 -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보조적으로 투입되는 근로자의 노임으로,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직접노무비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업체의 임금지급내역을 조사하여 도출 하여야함
 - ※ 선박수리용역에 대하여 「어업 지도선 살다호 수리용역에 따른 원가계산 연구 보고서」 내용 적용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3% 적용 산출

2) 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2012. 12. 24)

3) 제조원가 노무비 임율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하여 직종별 기본급으로 하고 상여금은 원가계산작성기준에 의하여 연간 200%를 적용하였고 퇴직급여충당금(기본급+상여금)은 연30일분을 더한 금액을 임율로 적용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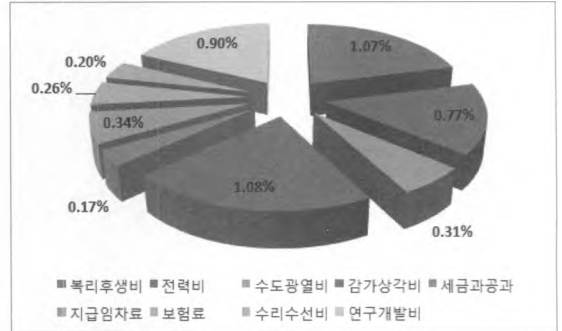
○ 경 비

- 제품의 완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순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예정 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각 경비를 세목별로 구분하고, 제조 경비는 기업경영분석자료(한국은행 발행)를 직접원가법을 적용 분석하여 표준원단위를 산정

- C28. 전기장비 분야 적용 경비 표준 원단위 산출

구분	2011	2010	2개년 평균
복리후생비	1.08%	1.06%	1.07%
전력비	0.74%	0.80%	0.77%
수도광열비	0.43%	0.19%	0.31%
감가상각비	1.03%	1.14%	1.08%
세금과공과	0.16%	0.17%	0.17%
지급임차료	0.34%	0.34%	0.34%
보험료	0.32%	0.19%	0.26%
수리수선비	0.20%	0.19%	0.20%
연구개발비	0.65%	1.16%	0.90%
계	4.95%	5.23%	5.09%

기업경영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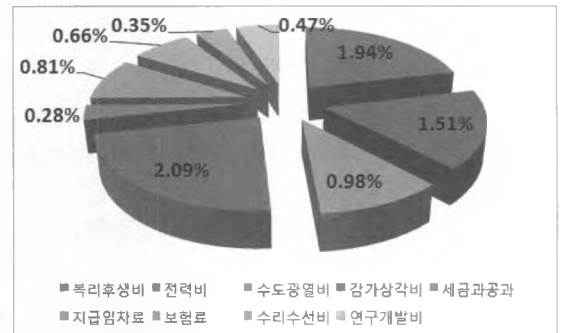


기업경영분석 경비 27개년 평균값

- C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분야 적용 경비 표준 원단위 산출

구분	2011	2010	2개년 평균
복리후생비	1.83%	2.05%	1.94%
전력비	1.57%	1.45%	1.51%
수도광열비	0.94%	1.02%	0.98%
감가상각비	1.88%	2.30%	2.09%
세금과공과	0.26%	0.29%	0.28%
지급임차료	0.89%	0.73%	0.81%
보험료	0.50%	0.82%	0.66%
수리수선비	0.31%	0.39%	0.35%
연구개발비	0.46%	0.49%	0.47%
계	8.63%	9.54%	9.08%

기업경영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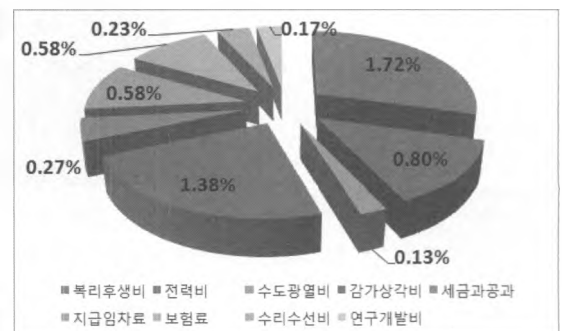


기업경영분석 경비 27개년 평균값

- C31. 선박 및 보트건조업 분야 적용 경비 표준 원단위 산출

구분	2011	2010	2개년 평균
복리후생비	1.70%	1.73%	1.72%
전력비	0.72%	0.88%	0.80%
수도광열비	0.16%	0.11%	0.13%
감가상각비	1.24%	1.51%	1.38%
세금과공과	0.24%	0.30%	0.27%
지급임차료	0.57%	0.59%	0.58%
보험료	0.48%	0.67%	0.58%
수리수선비	0.25%	0.20%	0.23%
연구개발비	0.13%	0.22%	0.17%
계	5.49%	6.21%	5.85%

기업경영분석자료



기업경영분석 경비 27개년 평균값

○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의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영업비용 중 판매비를 제외한 순관리비
-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비율의 일반관리비 합계액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상한율과 비교 낮은 비율 적용 산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일반관리 비율표

구 분	비 율	비 고
제조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름
음식료품의 제조 구매	14%	
섬유, 의복, 가죽제품의 제조 구매	8%	
나무, 나무제품의 제조 구매	9%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의 제조 구매	14%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 구매	12%	
제1차금속의 제조 구매	6%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의 제조 구매	7%	
기타물품의 제조 구매	11%	
용역	5%	
시설공사업	6%	

- C28. 전기장비 분야 적용 일반관리비 제비율 산출

구분	기업경영분석(손익계산서 기준)			예규기준	적용	비고
	2010	2011	평균			
일반관리비율	7.54%	5.94%	6.74%	7.0%	6.74%	

- C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분야 적용 일반관리비 제비율 산출

구분	기업경영분석(손익계산서 기준)			예규기준	적용	비고
	2010	2011	평균			
일반관리비율	9.67%	6.56%	8.11%	7.0%	7.0%	

- C31. 선박 및 보트건조업 분야 적용 일반관리비 제비율 산출

구분	기업경영분석(손익계산서 기준)			예규기준	적용	비고
	2010	2011	평균			
일반관리비율	4.09%	2.7%	3.4%	5.0%	3.4%	

○ 이 윤

- 당해업체의 영업이익으로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4)에 의거 이윤율을 적용하여 산출
- 이윤율 표

구분	시설공사	제조구매	용역	수입물품 구입	비고
비율	15 %	25 %	10 %	10 %	

- 가로등·보안등 주 물품 제조 구매 ⇒ 제조·구매 25% 적용
- 수배전반 물품제조 구매 ⇒ 제조·구매 25% 적용
- 선박 수리 용역사업 ⇒ 용역 10% 적용⁵⁾

IV 행정사항

- 부서 홈페이지 게시 및 행정포털 자료방에 게재하여 기준 적극 활용 노력
 - 게시 자료 : 별첨 물품 제조 구매 기초자료 참조
- 관련 부서에 정보 공유를 통한 설계 시 기초 자료로 활용 노력

V 기대 효과

- 물품 제조 구입시 제조원가 조사 및 원가작성 기준을 적용한 원가심사로 과다 설계를 조정하고 공사비 절감 등 지방재정 건전화 도모
 - 관급자재에 대한 조달구매 외 자체 입찰을 통한 조달 수수료 절감
 - 보다 많은 지역업체 참여 기회 부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원가분석 노하우의 전파로 발주부서는 물론 설계업체 원가작성 능력 향상
- 설계기준 운영으로 원가산정 일관성 유지 및 심사기간 단축
- 설계(제조원가) 심사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유지로 신뢰성 향상

4)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각 호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5)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수행 「어업 지도선 삼다호 수리용역에 따른 원가계산 연구 보고서」 참조 「용역」 이윤 10% 적용

1. 노무비 산출표

○ 직종별 M/D당 임율 산출표

NO.	직종명	기 본 급	상 여 금	퇴직급여 총당금	M/D당 임율	비고
1	기계설계사	95,645	15,940	9,298	120,883	
2	회로설계사	98,479	16,413	9,574	124,466	
3	제도사	90,432	15,072	8,792	114,296	
4	현도사	106,225	17,704	10,327	134,256	
5	강판공	79,818	13,303	7,760	100,881	
6	드릴공	64,690	10,781	6,289	81,760	
7	로구로공	55,562	9,260	5,401	70,223	
8	미킹공	68,903	11,483	6,698	87,084	
9	밀링공	62,272	10,378	6,054	78,704	
10	보링공	69,509	11,584	6,757	87,850	
11	볼반공	68,770	11,461	6,685	86,916	
12	샤링공	71,115	11,852	6,913	89,880	
13	쉐파공	69,110	11,518	6,719	87,347	
14	스룻타공	61,011	10,168	5,931	77,110	
15	절곡공	74,421	12,403	7,235	94,059	
16	제금공					
17	주물공	60,378	10,063	5,870	76,311	
18	단조공	65,772	10,962	6,394	83,128	
19	금형공	78,029	13,004	7,586	98,619	
20	목형공	72,788	12,131	7,076	91,995	
21	조형공	65,507	10,917	6,368	82,792	
22	압연공	74,111	12,351	7,205	93,667	
23	압출공	64,409	10,734	6,261	81,404	
24	열처리공	72,535	12,089	7,052	91,676	
25	용해공	65,565	10,927	6,374	82,866	
26	인발공	70,891	11,815	6,892	89,598	
27	태핑공	53,218	8,869	5,173	67,260	
28	판금공	70,763	11,793	6,879	89,435	
29	합금공	79,240	13,206	7,703	100,149	
30	제정공					
31	다이케스트공	60,336	10,056	5,866	76,258	
32	철물재단공	55,171	9,195	5,363	69,729	
33	철물재단사	59,018	9,836	5,737	74,591	
34	금속외통공	65,035	10,839	6,322	82,196	
35	회전외통공	53,146	8,857	5,166	67,169	
36	모형조각기공	82,068	13,678	7,978	103,724	

NO.	직종명	기 본 급	상 여 금	퇴직급여 총당금	M/D당 임율	비고
37	가위절단공	43,706	7,284	4,249	55,239	
38	모형절단공	65,115	10,852	6,330	82,297	
39	방전절단공	87,754	14,625	8,531	110,910	
40	산소절단공	64,840	10,806	6,303	81,949	
41	알루미늄절단공	67,934	11,322	6,604	85,860	
42	유리절단및재단공	69,795	11,632	6,785	88,212	
43	벤딩머선공	64,573	10,762	6,277	81,612	
44	벨런스머선공※	59,346	9,891	5,769	75,006	
45	수동고정공	60,917	10,152	5,922	76,991	
46	수동선반공	73,339	12,223	7,130	92,692	
47	자동선반공	58,407	9,734	5,678	73,819	
48	프레나공	65,300	10,883	6,348	82,531	
49	프레스공	65,678	10,946	6,385	83,009	
50	레이저광선공	66,724	11,120	6,487	84,331	
51	일반화학공	87,931	14,655	8,548	111,134	
52	요업공	68,090	11,348	6,619	86,057	
53	도자기제품제조공	54,892	9,148	5,336	69,376	
54	합성수지피막공	76,396	12,732	7,427	96,555	
55	권취공					
56	대연공	68,369	11,394	6,646	86,409	
57	신선공	70,040	11,673	6,809	88,522	
58	연선공	63,314	10,552	6,155	80,021	
59	연합공	77,458	12,909	7,530	97,897	
60	절연공	64,234	10,705	6,244	81,183	
61	피복공	71,716	11,952	6,972	90,640	
62	케이블제조공	51,284	8,547	4,985	64,816	
63	고무제품제조공	62,805	10,467	6,106	79,378	
64	리벳공	59,198	9,866	5,755	74,819	
65	용접공	72,580	12,096	7,056	91,732	
66	그라인더공	72,281	12,046	7,027	91,354	
67	랩핑공	73,406	12,234	7,136	92,776	
68	빠데도포공	61,516	10,252	5,980	77,748	
69	빠후공	57,095	9,515	5,550	72,160	
70	사지공	56,205	9,367	5,464	71,036	
71	세척공	65,759	10,959	6,393	83,111	
72	호닝공	59,261	9,876	5,761	74,898	
73	도장공(붓칠)	65,681	10,946	6,385	83,012	
74	도장공(취부)	63,185	10,530	6,142	79,857	
75	목장도장공	66,671	11,111	6,481	84,263	
76	전해연마공	56,171	9,361	5,461	70,993	
77	지석연마공	65,963	10,993	6,413	83,369	
78	컴파운드연마공	63,407	10,567	6,164	80,138	
79	화학연마공	63,897	10,649	6,212	80,758	

NO.	직종명	기 본 급	상 여 금	퇴직급여 총당금	M/D당 임율	비고
80	아연도금공	61,490	10,248	5,978	77,716	
81	전기도금공	68,082	11,347	6,619	86,048	
82	침적도금공	69,730	11,621	6,779	88,130	
83	사출공	62,881	10,480	6,113	79,474	
84	성형공	66,075	11,012	6,423	83,510	
85	압출공	65,896	10,982	6,406	83,284	
86	배합공	63,999	10,666	6,222	80,887	
87	가구공	66,620	11,103	6,476	84,199	
88	유리제품제조공	71,259	11,876	6,927	90,062	
89	제재공	66,005	11,000	6,417	83,422	
90	조성화학공	71,450	11,908	6,946	90,304	
91	합판제조공	62,843	10,473	6,109	79,425	
92	제재기계운전공	77,936	12,989	7,577	98,502	
93	목재건조기계공	65,403	10,900	6,358	82,661	
94	제지공	67,296	11,216	6,542	85,054	
95	조선목공	75,896	12,649	7,378	95,923	
96	골판지제조공	60,707	10,117	5,902	76,726	
97	부품조립공	57,443	9,573	5,584	72,600	
98	강전기계조립공	70,556	11,759	6,859	89,174	
99	약전기계조립공	66,301	11,050	6,445	83,796	
100	중기계조립공	74,049	12,341	7,199	93,589	
101	경기계조립공	64,329	10,721	6,254	81,304	
102	전자제품조립공	57,036	9,506	5,545	72,087	
103	통신기계조립공	69,621	11,603	6,768	87,992	
104	제품시험공	81,214	13,535	7,895	102,644	
105	품질관리공	77,273	12,878	7,512	97,663	
106	품질관리사	109,318	18,219	10,628	138,165	
107	기계정비공	82,521	13,753	8,022	104,296	
108	전기정비공	80,047	13,341	7,782	101,170	
109	차량정비공	85,588	14,264	8,321	108,173	
110	제품검사공	57,609	9,601	5,600	72,810	
111	제품조정공	67,179	11,196	6,531	84,906	
112	기계기술공	81,795	13,632	7,952	103,379	
113	다듬질공	53,419	8,903	5,193	67,515	
114	보선공	83,566	13,927	8,124	105,617	
115	배관공	89,312	14,885	8,683	112,880	
116	배선공	71,900	11,983	6,990	90,873	
117	권선공-코일	54,797	9,132	5,327	69,256	
118	목재포장공	61,773	10,295	6,005	78,073	
119	물품포장공	56,968	9,494	5,538	72,000	
120	철강포장공	63,729	10,621	6,195	80,545	
121	제품출하공	69,784	11,630	6,784	88,198	
122	전산용지정합공	79,551	13,258	7,734	100,543	

NO	직종명	기 본 급	상 여 금	퇴직급여 총당금	M/D당 임율	비고
123	스캔기능공	63,558	10,593	6,179	80,330	
124	교정사	57,546	9,591	5,594	72,731	
125	전자편집디자인	97,485	16,247	9,477	123,209	
126	스티카인쇄공	64,596	10,766	6,280	81,642	
127	전자조판공	78,621	13,103	7,643	99,367	
128	사진제판공	80,891	13,481	7,864	102,236	
129	옵셋인쇄공	88,251	14,708	8,579	111,538	
130	인쇄동판제조공	81,076	13,512	7,882	102,470	
131	인쇄연판제조공	99,117	16,519	9,636	125,272	
132	제본공	72,052	12,008	7,005	91,065	
133	지류제단공	80,136	13,356	7,791	101,283	
134	전자출판출력공	106,101	17,683	10,315	134,099	
135	활판인쇄공	84,462	14,077	8,211	106,750	
136	금박공	73,256	12,209	7,122	92,587	
137	연포장재접합공	64,678	10,779	6,288	81,745	
138	관권공	54,121	9,020	5,261	68,402	
139	방직기계보전공	70,001	11,666	6,805	88,472	
140	스넵공	52,915	8,819	5,144	66,878	
141	연단공	64,688	10,781	6,289	81,758	
142	연사공	53,821	8,970	5,232	68,023	
143	염직공	66,898	11,149	6,503	84,550	
144	오바로그공	51,416	8,569	4,998	64,983	
145	이본침공	68,692	11,448	6,678	86,818	
146	인타로그공	54,697	9,116	5,317	69,130	
147	정경공	67,610	11,268	6,573	85,451	
148	재봉기운용사	55,156	9,192	5,362	69,710	
149	제화공	69,044	11,507	6,712	87,263	
150	직물제단공	72,193	12,032	7,018	91,243	
151	직물제단사	65,989	10,998	6,415	83,402	
152	직포공	71,205	11,867	6,922	89,994	
153	침염공	58,364	9,727	5,674	73,765	
154	편직공	70,258	11,709	6,830	88,797	
155	피혁공	62,028	10,338	6,030	78,396	
156	상침공	58,371	9,728	5,674	73,773	
157	하침공	51,470	8,578	5,004	65,052	
158	통신내외선공	84,997	14,166	8,263	107,426	
159	전기기사	109,617	18,269	10,657	138,543	
160	전기산업기사	90,620	15,103	8,810	114,533	
161	전기기능사	88,402	14,733	8,594	111,729	
162	유리공	68,396	11,399	6,649	86,444	
163	컴퓨터H/W기사	113,365	18,894	11,021	143,280	
164	컴퓨터S/W기사	95,361	15,893	9,271	120,525	
165	컴퓨터운용사	84,268	14,044	8,192	106,504	

NO.	직종명	기 본 급 ⁶⁾	상 여 금 ⁷⁾	퇴직급여 총당금 ⁸⁾	M/D ⁹⁾ 당 임율	비고
166	콘크리트제품	78,905	13,150	7,671	99,726	
167	중기운전사	80,007	13,334	7,778	101,119	
168	트레일러공	62,600	10,433	6,086	79,119	
169	돌분쇄공	68,600	11,433	6,669	86,702	
170	착암공	68,601	11,433	6,669	86,703	
171	소성공	77,956	12,992	7,579	98,527	
172	인조석가공공	63,962	10,660	6,218	80,840	
173	폐수처리공	74,141	12,356	7,208	93,705	
174	식품제조공	57,661	9,610	5,605	72,876	
175	보통인부	60,236	10,039	5,856	76,131	
176	작업반장	87,508	14,584	8,507	110,599	
177	안전관리사	95,228	15,871	9,258	120,357	
178	벨트콘베이어	68,948	11,491	6,703	87,142	
179	보일러공	84,412	14,068	8,206	106,686	

6) 기본급 : 2013년도 제조업시중노임단가 적용(중소기업중앙회 발표)

7) 상여금 : 기본급에 년 200% 적용

8) 퇴직충당금 : 지급액에 대하여 년 1/12 지급 계상

9) 일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기준

2. 경비 산출표

○ 경비 계산표

구 분		선박 수리(예시) 금 액	비고
배부대상액			
경비표준원단위			
비 목		340,506,225	(재료비+노무비)
선 체 상,하가료	계별계산	10,000,000	원가법
폐기물처리수수료	계별계산	740,000	
기타경비	계별계산	1,500,000	
복리후생비	1.716%	5,843,086	
전력비	7.97%	2,713,834	
수도광열비	1.34%	456,278	
감가상각비	1.375%	4,681,960	
세금과공과	2.73%	929,581	
지급임차료	5.8%	1,974,936	
보험료	5.77%	1,964,720	
수리수선비	2.25%	766,139	
연구개발비	1.73%	589,075	
계	5.85%	32,159,609	

○ 경비 표준원단위 산출표

구 분	기업경영 분석 (2011년)	기업경영 분석 (2010년)	합 계	경비 원단위 ¹⁰⁾	비 고
복리후생비	1.704%	1.728%	3.432%	1.716%	원가법
전력비	7.17%	8.76%	15.93%	7.97%	
수도광열비	1.61%	1.07%	2.68%	1.34%	
감가상각비	1.24%	1.51%	2.75%	1.375%	
세금과공과	2.42%	3.04%	5.46%	2.73%	
지급임차료	5.70%	5.89%	11.59%	5.8%	
보험료	4.81%	6.72%	11.53%	5.77%	
수리수선비	2.45%	2.04%	4.49%	2.25%	
연구개발비	1.28%	2.17%	3.45%	1.73%	
계	5.488%	6.207%	11.695%	5.85%	

10) 경비원단위는 기업경영분석자료 2년기준의 경비원단위 평균치 적용

○ 경비 배부율 산출표

- 품명 : 기업경영분석자료(2010년)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제조원가	73,540,356		
재료비	43,665,769		
노무비	6,041,208		
배부대상액	49,706,977	(재료비+노무비)	원가법
복리후생비	859,069	1,728%	
전력비	435,625	8,76%	
수도광열비	53,343	1,07%	
감가상각비	750,747	1,51%	
세금과공과	151,089	3,04%	
지급임차료	292,620	5,89%	
보험료	334,056	6,72%	
수리수선비	101,356	2,04%	
연구개발비	108,020	2,17%	
계	3,085,925	6,207%	

- 품명 : 기업경영분석자료(2011년)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제조원가	77,515,349		
재료비	48,982,481		
노무비	6,177,174		
배부대상액	55,159,655	(재료비+노무비)	원가법
복리후생비	940,115	1,704%	
전력비	395,325	7,17%	
수도광열비	89,078	1,61%	
감가상각비	683,852	1,24%	
세금과공과	133,752	2,42%	
지급임차료	314,191	5,70%	
보험료	265,216	4,81%	
수리수선비	135,119	2,45%	
연구개발비	70,515	1,28%	
계	3,027,162	5,488%	

○ 경비 조정액 산출표

- 품명 : 기업경영분석자료(2010년)

비 목	금 액	조정내역	금 액	비 목
복리후생비	859,069		859,069	복리후생비
전력비	435,625		435,625	전력비
가스수도료	53,343	수도광열비로 대체	53,343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1,501,493	50% 적용	750,747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151,089		151,089	세금과공과
임차료	292,620	지급임차료로 대체	292,620	지급임차료
보험료	334,056		334,056	보험료
수선비	202,712	수리수선비로 대체 50%적용	101,356	수리수선비
외주가공비	10,154,832	불인과목		
운반.하역.보관.포장비	481,083	불인과목		
경상개발비	108,020	연구개발비로 대체	108,020	연구개발비
기타경비	8,586,262	불인과목		
계	23,160,204		3,085,925	

- 품명 : 기업경영분석자료(2011년)

비 목	금 액	조정내역	금 액	비 목
복리후생비	940,115		940,115	복리후생비
전력비	395,325		395,325	전력비
가스수도료	89,078	수도광열비로 대체	89,078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1,367,703	50% 적용	683,852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133,752		133,752	세금과공과
임차료	314,191	지급임차료로 대체	314,191	지급임차료
보험료	265,216		265,216	보험료
수선비	270,237	수리수선비로 대체 50%적용	135,119	수리수선비
외주가공비	13,772,042	불인과목		
운반.하역.보관.포장비	433,077	불인과목		
경상개발비	70,515	연구개발비로 대체	70,515	연구개발비
기타경비	5,782,128	불인과목		
계	23,833,379		3,027,162	

3.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표

○ 일반관리비 집계표

구분		일반관리비율 ¹¹⁾		비고
		계산	조정	
기업 경영 분석	2010년	4.09%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011년	2.70%		
	평균	3.40%	5.00%	
표준원단위			3.40%	

○ 일반관리비 비율 산출표

- 품명 : 기업경영분석자료(2010년)

구분	금액	비고
I 매출원가	71,728,414	
II 판매비및일반관리비	4,150,853	
III 판매비와및불인과목	1,215,590	
접대비	51,373	
광고선전비	74,878	
대손상각비	421,023	
무형자산상각비	29,725	
기타판매비와관리비	638,591	
IV 조정후 일반관리비	2,935,263	4.09%

- 품명 : 기업경영분석자료(2011년)

구분	금액	비고
I 매출원가	74,036,734	
II 판매비및일반관리비	4,154,008	
III 판매비와및불인과목	2,155,294	
접대비	56,309	
광고선전비	93,537	
대손상각비	293,405	
무형자산상각비	23,739	
기타판매비와관리비	1,688,304	
IV 조정후 일반관리비	1,998,714	2.70%

11) 일반관리비율 = 조정후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100

○ 일반관리 비율표

구분	비율	비고
제조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름
음식료품의 제조 구매	14%	
섬유, 의복, 가죽제품의 제조 구매	8%	
나무, 나무제품의 제조 구매	9%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의 제조 구매	14%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 구매	12%	
제1차금속의 제조 구매	6%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의 제조 구매	7%	
기타물품의 제조 구매	11%	
용역	5%	
시설공사업	6%	

○ 이윤율표

구분	비율	비고
시설공사	15%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름
제조구매	25%	
용역	10%	
수입물품의 구입	10%	

4. 참고자료

○ 기업 손익계산서(2010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비 고
매출액	82,002,021	파생금융상품 평가이익	3,318,321	· 2010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발행) - 선박 및 보트건조업 (2011년 발표)
매출원가	71,728,414	투자·유형자산 처분이익	69,736	
매출총손익	10,273,606	지분법평가이익	1,688,614	
판매비와관리비	4,150,853	기타영업외수익	1,201,107	
급여	1,288,304	영업외비용	11,557,901	
퇴직급여	73,830	이자비용	1,438,933	
복리후생비	216,914	외환차손	1,481,967	
수도광열비	13,879	외화환산손실	272,061	
세금과공과	65,043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실	3,232,664	
임차료	69,463	파생금융상품 평가손실	3,790,480	
감가상각비	142,291	투자·유형자산처분손실	116,048	
접대비	51,373	지분법평가손실	243,944	
광고선전비	74,878	자산재평가손실	-	
경상개발비·연구비	207,630	기타영업외비용	981,804	
보험료	38,403	경상손익	-	
운반·하역·보관·포장비	213,167	특별이익	-	
대손상각비	421,023	특별손실	-	
무형자산상각비	29,725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익	6,190,637	
개발비상각	682	법인세비용	2,170,433	
지급수수료	606,340	계속사업이익	4,020,203	
기타판매비와관리비	638,591	중단사업손익	△16,068	
영업손익	6,122,754	당기순손익	4,004,135	
영업외수익	11,625,784			
이자수익	799,909			
배당금수익	79,584			
외환차익	1,308,120			
외화환산이익	158,317			
파생금융상품 거래이익	3,002,076			

○ 기업 제조원가명세서(2010년)

구 분	금 액	비 고
당기총제조비용	78,319,860	· 2010 기업경영분석
재료비	48,982,481	(한국은행 발행)
노무비	6,177,174	- 선박 및 보트건조업
경비	3,160,205	(2011년 발표)
복리후생비	859,069	
전력비	435,625	
가스수도료	53,343	
감가상각비	1,501,493	
세금과공과	151,089	
임차료	292,620	
보험료	334,056	
수선비	202,712	
외주가공비	10,154,832	
운반.하역.보관.포장비	481,083	
경상개발비	108,020	
기타경비	8,586,262	
기초재공품원가	1,258,515	
기말재공품원가	1,181,436	
유형자산(타계정)대체액	881,590	
당기제품제조원가	77,515,349	

1. 노무비 산출표

-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제수당,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직종별 M/D당 임율 산출표

직종명	기 본 급	상 여 금	퇴직 급여 충 당 금	M/D 당 임 율	M/hr 당 임 율
중기운전사	80,007	13,334.50	7,778.46	101,119.96	12,639
현도사	106,225	17,704.17	10,327.43	134,256.60	16,782
산소절단공	64,840	10,806.67	6,303.89	81,950.56	10,243
그라인더공	72,281	12,046.83	7,027.32	91,355.15	11,419
용접공	72,580	12,096.67	7,056.39	91,733.06	11,466
인발공	70,891	11,815.17	6,892.18	89,598.35	11,199
절곡공	74,421	12,403.50	7,235.38	94,059.88	11,757
아연도금공	61,490	10,248.33	5,978.19	77,716.53	9,714
도장공	63,185	10,530.83	6,142.99	79,858.82	9,982
보통인부	60,236	10,039.33	5,856.28	76,131.61	9,516
제품조립공	67,179	11,196.50	6,531.29	84,906.79	10,613
부품조립공	57,443	9,573.83	5,584.74	72,601.57	9,075
제품검사공	57,609	9,601.50	5,600.88	72,811.38	9,101
강전기계조립공	70,556	11,759.33	6,859.61	89,174.94	11,146
약전기계조립공	66,301	11,050.17	6,445.93	83,797.10	10,474
중기계조립공	74,049	12,341.50	7,199.21	93,589.71	11,698
배전공	71,900	11,983.33	6,990.28	90,873.61	11,359

- 주) 1. 중소기업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단가 적용(중소기업중앙회 발표: 2012. 12)
 2. 상여금은 200%를 적용하여 산정
 3.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제 34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에 의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산정 (법률 제 85615호, 2007. 7. 27/ 제 8635호, 2007. 8. 3)

2. 경비 산출표

○ 경비 계산표

구 분		금 액	비고
배부대상액			
경비표준원단위			
비 목			
		852,064	(재료비+노무비)
복리후생비	1.94%	16,538	원가법
전력비	1.51%	12,857	
수도광열비	9.8%	8,341	
감가상각비	20.9%	17,816	
세금과공과	2.8%	2,351	
지급임차료	8.1%	6,884	
보험료	6.6%	5,598	
수리수선비	3.5%	2,973	
연구개발비	4.7%	4,030	
계	9.1%	77,388	

○ 경비 표준원

구분	기업경영 분석 (2011년)	기업경영 분석 (2010년)	합 계	경비 원단위	비 고
복리후생비	1.83%	2.05%	3.88%	1.94%	원가법
전력비	1.57%	1.45%	3.02%	1.51%	
수도광열비	0.94%	1.02%	1.96%	0.98%	
감가상각비	1.88%	2.30%	4.18%	2.09%	
세금과공과	0.26%	0.29%	0.55%	0.28%	
지급임차료	0.89%	0.73%	1.62%	0.81%	
보험료	0.50%	0.82%	1.31%	0.66%	
수리수선비	0.31%	0.39%	0.70%	0.35%	
연구개발비	0.46%	0.49%	0.95%	0.47%	
계	8.63%	9.54%	18.16%	9.08%	

3.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표

○ 일반관리비 집계표

구분		일반관리비율 ¹²⁾		비고
		계산	조정	
기업 경영 분석	2010년	9.67%		○ 행정안전부예규 -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기준치 : 7%
	2011년	6.56%		
	평균	8.11%	7.00%	
표준원단위			7.00%	

○ 일반관리비 비율 산출표

- 품명 : 기업경영분석자료(2010년)

구분	금액	비고
I 매출원가	46,776,955	
II 판매비및일반관리비	6,320,645	
III 판매비와및불인과목	1,795,624	
접대비	207,576	
광고선전비	206,667	
대손상각비	257,484	
무형자산상각비	93,002	
기타판매비와관리비	1,030,896	
IV 조정후 일반관리비	4,525,021	9.67%

- 품명 : 기업경영분석자료(2011년)

구분	금액	비고
I 매출원가	45,884,936	
II 판매비및일반관리비	4,965,512	
III 판매비와및불인과목	1,957,203	
접대비	185,141	
광고선전비	60,986	
대손상각비	186,771	
무형자산상각비	44,777	
기타판매비와관리비	1,479,528	
IV 조정후 일반관리비	3,008,309	6.56%

12) 일반관리비율 = 조정후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100

○ 일반관리 비율표

구 분	비 율	비 고
제조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름
음식료품의 제조 구매	14%	
섬유, 의복, 가죽제품의 제조 구매	8%	
나무, 나무제품의 제조 구매	9%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의 제조 구매	14%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 구매	12%	
제1차금속의 제조 구매	6%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의 제조 구매	7%	
기타물품의 제조 구매	11%	
용역	5%	
시설공사업	6%	

-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율표에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 할 수 없다

○ 이윤율표

구 분	비 율	비 고
시설공사	15%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름
제조구매	25%	
용역	10%	
수입물품의 구입	10%	

4. 참고자료

○ 기업 손익계산서(2010년)

(단위 : 백만원)

항목명	항목명	2010	2011	비고
C25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매출액	57,341,765	53,241,879	
	매출원가	46,776,955	45,884,936	
	매출총손익	10,564,810	7,356,943	
	판매비와관리비	6,320,645	4,965,512	
	급여	2,226,362	1,842,814	
	퇴직급여	267,370	232,848	
	복리후생비	377,848	267,413	
	수도광열비	23,772		
	세금과공과	141,744	125,134	
	임차료	82,330	93,390	
	감가상각비	154,953	176,313	
	접대비	207,576	185,141	
	광고선전비	206,667	60,986	
	경상연구개발비	232,431	171,970	
	보험료	119,912	98,426	
	운반.하역.보관.포장비	455,316		
	대손상각비	257,484	186,771	
	무형자산상각비	93,002	44,777	
	개발비상각	4,577		
	지급수수료	442,981		
	기타판매비와관리비	1,030,895	1,479,528	
	영업손익	4,244,165	2,391,431	
	영업외수익	2,013,794	1,209,197	
	이자수익	304,460	208,871	
	배당금수익	8,207	44,382	
	외환차익	346,197	175,643	
	외화환산이익	48,456	43,158	

항목명	항목명	2010	2011	비고
C25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파생금융상품거래이익	80,315		
	파생금융상품평가이익	163,863		
	투자·유형자산 처분이익	534,577	246,410	
	지분법평가이익	258,577	31,001	
	기타영업외수익	269,142	459,732	
	영업외비용	3,032,264	2,158,001	
	이자비용	1,307,717	1,105,485	
	외환차손	368,901	173,472	
	외환환산손실	91,806	89,323	
	파생금융상품거래손실	97,049		
	파생금융상품평가손실	198,940		
	투자·유형자산 처분손실	54,113	147,820	
	지분법평가손실	264,251	74,018	
	자산재평가손실	-		
	기타영업외비용	649,488	567,884	
	법인세차감전순손익	3,225,694	1,442,627	
	법인세비용	508,257	431,309	
	계속사업이익	2,717,437		
	중단사업손익	△189,618		
	당기순손익	2,527,819	1,011,317	

○ 기업 제조원가명세서

항목명1	항목명3	2010	2011	비 고
C25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당기총제조비용	45,707,120	43,276,373	
	재 료 비	27,079,203	27,160,318	
	노 무 비	4,616,208	4,158,538	
	경 비	14,011,709	11,957,517	
	복리후생비	641,357	574,511	
	전력비	453,869	491,690	
	가스수도비	319,921	293,505	
	감가상각비	1,440,518	1,179,963	
	세금과공과	91,194	81,791	
	임차료	228,772	277,643	
	보험료	256,397	155,564	
	수선비	245,486	191,692	
	외주가공비	5,348,479	5,160,779	
	운반·하역·보관·포장비	577,527	557,166	
	경상개발비	153,228	143,198	
	기타경비	4,254,961	2,850,014	
	기초재공품원가	1,508,552	1,003,890	
	기말재공품원가	1,685,072	1,175,933	
	유형자산(타계정)대체액	487,491	236,171	
	당기제품제조원가	45,043,109	42,868,159	

1. 노무비 산출표

○ 직종별 M/D당 임율 산출표

직종명	기 본 급	상 여 금	퇴직 급여 총 당 금	M/D 당 임 율	M/hr 당 임 율
중기운전사	80,007	13,334.50	7,778.46	101,119.96	12,639
현도사	106,225	17,704.17	10,327.43	134,256.60	16,782
산소절단공	64,840	10,806.67	6,303.89	81,950.56	10,243
그라인더공	72,281	12,046.83	7,027.32	91,355.15	11,419
용접공	72,580	12,096.67	7,056.39	91,733.06	11,466
인발공	70,891	11,815.17	6,892.18	89,598.35	11,199
절곡공	74,421	12,403.50	7,235.38	94,059.88	11,757
아연도금공	61,490	10,248.33	5,978.19	77,716.53	9,714
도장공	63,185	10,530.83	6,142.99	79,858.82	9,982
보통인부	60,236	10,039.33	5,856.28	76,131.61	9,516
제품조정공	67,179	11,196.50	6,531.29	84,906.79	10,613
부품조립공	57,443	9,573.83	5,584.74	72,601.57	9,075
제품검사공	57,609	9,601.50	5,600.88	72,811.38	9,101
강전기계조립공	70,556	11,759.33	6,859.61	89,174.94	11,146
약전기계조립공	66,301	11,050.17	6,445.93	83,797.10	10,474
중기계조립공	74,049	12,341.50	7,199.21	93,589.71	11,698
배전공	71,900	11,983.33	6,990.28	90,873.61	11,359

- 주) 1. 중소기업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단가 적용(중소기업중앙회 발표: 2012. 12)
 2. 상여금은 200%를 적용하여 산정
 3. 퇴직급여 총당금은 근로기준법 제 34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에 의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산정 (법률 제
 85615호, 2007. 7. 27/ 제 8635호, 2007. 8. 3)

2. 경비 산출표

○ 경비 계산표

구 분		수배전반(예시) 금 액	비고
배부대상액			
경비표준원단위			
비 목		184,869,202	(재료비+노무비)
복리후생비	1.08%	2,002,133	원가법
전력비	0.74%	1,366,183	
수도광열비	0.43%	785,694	
감가상각비	1.03%	1,904,152	
세금과공과	0.16%	303,185	
지급임차료	0.34%	621,160	
보험료	0.32%	598,976	
수리수선비	0.20%	369,738	
연구개발비	0.65%	1,197,952	
계	5.85%	9,149,173	

○ 경비 표준원단위 산출표

구 분	기업경영 분석 (2011년)	기업경영 분석 (2010년)	합 계	경비 원단위 ¹³⁾	비 고
복리후생비	1.083%	1.059%	2.142%	1.071%	원가법
전력비	0.739%	0.797%	1.536%	0.768%	
수도광열비	0.425%	0.192%	0.617%	0.309%	
감가상각비	1.030%	1.138%	2.168%	1.084%	
세금과공과	0.164%	0.169%	0.333%	0.167%	
지급임차료	0.336%	0.340%	0.676%	0.338%	
보험료	0.324%	0.185%	0.509%	0.255%	
수리수선비	0.200%	0.192%	0.392%	0.196%	
연구개발비	0.648%	1.160%	1.808%	0.904%	
계	4.949%	5.232%	10.181%	5.092%	

13) 경비원단위는 기업경영분석자료 2년기준의 경비원단위 평균치 적용

○ 경비 배부율 산출표

- 품명 : 기업경영분석자료(2010년)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제조원가	46,145,983		
재료비	34,817,076		
노무비	3,002,512		
배부대상액	37,819,588	(재료비+노무비)	원가법
복리후생비	409,619	0.0108	
전력비	279,600	0.0074	
수도광열비	160,748	0.0043	
감가상각비	389,651	0.0103	
세금과공과	62,037	0.0016	
지급임차료	127,153	0.0034	
보험료	122,823	0.0032	
수리수선비	75,709	0.0020	
연구개발비	245,438	0.0065	
계	1,872,778	4.95%	

- 품명 : 기업경영분석자료(2011년)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제조원가	44,121,349		
재료비	34,884,935		
노무비	2,991,680		
배부대상액	37,876,615	(재료비+노무비)	원가법
복리후생비	400,814	0.0106	
전력비	301,765	0.0080	
수도광열비	72,838	0.0019	
감가상각비	430,614	0.0114	
세금과공과	63,973	0.0017	
지급임차료	128,684	0.0034	
보험료	70,205	0.0019	
수리수선비	72,779	0.0019	
연구개발비	438,884	0.0116	
계	1,980,555	5.23%	

1. 제조원가 계산 방법 ⇒ 한양대학교 경제 연구소 자료 참조

1. 재료비

1-1. 재료비의 의미 : 재료비는 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로서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함

1-2. 재료비의 분류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서는 재료비를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재료비	직접재료비	주요재료비, 부분품비, 재료 부대비
	간접재료비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포장재료비
	설 물(공제금액)	작업설, 부산물, 연산물

1-2-1. 직접재료비

-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¹⁴⁾
-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비, 수입부품비, 외장재료 및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0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¹⁵⁾.

※ 매입부품비 물가조사 방식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되나 수입부품비는 수입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 직접재료비의 계산방법 ⇒ 재료의 원단위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

(재료비 = 재료의 원단위 수량 X 단위당 가격 합계액)

° 직접재료비의 집계표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원단위)	단 가	금 액

※ 구분 : 매입부품, 자작품, 외장재료비, 수입품, 외주가공품 등을 구분

° 부분품 산출표(매입품)

직접재료비 산출표(품명 :)

도면 번호	품 명	재 질	규 격	단 위	수 량 (원단위)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또는 단가조사처

14) 예시 : 합판, 철판, 원단 등

15) 단추, 전자부품 등

° 자작품 산출표 (가공품)

품 명(계산근거) (번호)

도면 번호	명 칭	단 위	수량 (원단위)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재질: (표면처리)
						규격:
						소요:
						재료규격 및 가격:
						평료:(평가재료)

※ 평가재료는 산실량을 제외한 작업설중, 유가물을 평가하여 직접재료비 총액에서 계산한다.

▶ 직접재료비와 원단위 산정방법

- 재료의 원단위라 함은 일정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생산요소의 물량을 말하며, 재료의 원단위 계산은 일정 단위당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소요량을 산출(정미량에 손실율, 불량율 및 시료율을 포함)

$$\text{원단위} = \text{정미량} \times (1 + \text{손실율}) \times (1 + \text{불량율} + \text{시료율})$$

- 소재료부터 조립가공에 이르는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적용하며, 부분품을 단순히 조립가공하여 완성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손실율 불포함

주) 일반물자 원가계산시에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율¹⁶⁾과 불량율¹⁷⁾만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료율¹⁸⁾을 불인하여야 함

▶ 직접재료비 소요량(원단위)산출연습

- 판재료 계산식은 원판에서 판뜨기방식, 부분품의 비중에 의한 중량계산식과 중량량을 계량하는 방법 등이 있다

° 판뜨기 계산식

$$\text{① 원판규격(세로)} \div \text{제품소요규격(세로)} = A$$

$$\text{원판규격(가로)} \div \text{제품소요규격(가로)} = B$$

$$\text{원판매당가격} \div (A \times B \text{ 생산매수}) = \text{매당단가}$$

16) 손실율(량) : 손실율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투입원재료의 중량과 실제 생산된 제품의 단위 중량과의 차이를 투입원재료의 중량으로 나눈 값.

$$\text{* 손실량} = \text{투입 원재료 중량} - \text{완성 제품의 단위중량}$$

$$\text{* 손실율} = \text{손실량} \div \text{투입 원재료 중량}$$

17) 불량율(량) : 불량율은 당기 조사대상 기간중 발생한 불량수량을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text{* 불량율} = \text{불량량} \div \text{총생산량 (보수나 재가공에 의해 회복이 가능한 불량품은 제외)}$$

18) 시료율(량) : 시료율은 당기 생산기준중 사용한 시료량을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text{* 시료율} = \text{시료량} \div \text{총생산량(재사용이 불가능한 시료로, 원재료와 완성제품의 강도, 소재, 배합율 등의 성능검사를 위한 파괴 시험용 시료)}$$

② 원판가격 ÷ {(원판세로 × 가로규격) ÷ (제품소요규격세로 × 가로)} = 매당단가

° 비중에 의한 계산식

비중(specific gravity)이란 물질의 단위용적의 무게(질량)와 어떤 표준물질 (4℃의 물의 비중을 1로 한다)과의 대비이다. 금속의 비중(단위중량)은 온도, 재질의 순도, 합금된 배합율(량) 및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소요재료의 정확한 비중조사가 요청된다.(소요재료의 단위 중량에 두께와 면적을 곱하여 산정)

제품두께(cm) × 넓이(cm) × 길이(cm) × (1+감손율 및 여유율) × 비중 × 원판"g"당 단가
=매당단가

° 천장 중량에 의한 계산식

(천장중량 + 감손 및 여유량) × 원판"g"당 단가 = 매당단가

- 봉 재류(환봉 및 각봉류)계산식은 장척계산 비중에 의한 중량계산 등이 있으며 환봉이나 각봉의 외볼르 절삭 또는 절단 단면을 다듬가공하는 경우, 절삭기계 및 절삭공구의 종류에 따라 가공여유를 제품량에 가산하여 소요량을 결정 한다.

° 장척물 계산식

* 원자재 장척 ÷ (제품규격 + 감손 및 여유량) + 생산수량 원자재 단위가격 ÷ 생산수량
= 개당단가

* 외경다듬 : 제품규격 + 외경다듬량 (율)

* 길이다듬 : 절단치수 + 단면다듬량(율)

° 환봉 계산식 : 지름 × pi/4 × 제품길이 × 비중 × (1+감손 및 여유율) × 원자재 "g"
단위단가=개당단가

° 각봉 비중계산식 : 판재 계산식과 같이(두께 × 넓이 × 길이) × 비중 × (1+감손 및 여유율 × 원자재"g" 단위단가 = 개당단가

- 판재류의 계산에 있어서 장척계산식은 봉 재류 계산식과 같으며 중량으로 계산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다.

* {제품외경² -(제품외경-판의두께×2)²} × pi/4 × 길이 × 비중 × (1+감손 및 여유율) × 원자재 "g"당 단가 = 개당단가

- 용적을 중량으로 또는 용적으로 계산하는 산식이 계산은 화물중 활대품이나 중량품을 계산할 때 이용된다

° 용적을 중량으로 계산할 때 (세로M × 가로M × 길이M) ÷ 1,132 =톤당 0.883

° 중량을 용적으로 계산할 때 (G)중량/(V)용적 V=중량/용적

- **배합설계에 의한 계산식**은 각종 원료, 원자재 등을 설계치에 의하여 배합 또는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사출품 인발 압출품, 레미콘, 아스콘, 화공 의약품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예) 아스팔트의 혼합물은 그 특성이 안정성, 가요성, 미끄럼, 저항성, 내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포장지역의 도로사정, 즉 교통량, 기후조건, 포장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하며, 따라서 사용원료, 원자재도 선택적이라 할 수 있다.

배합재료는 역청재료(아스팔트와 타르)와 골재(자갈, 모래, 슬래그, 펠러 등)이며, 혼합기에 투입할 때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가열 혼합 후 제품은 중량으로 판매한다.

▶ 재료의 단위당 가격 결정

- 원가계산시점에 따라 사전원가 계산과 사후 원가계산(정산조건)으로 나누며 원가계산방법에 따라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으로 계산범위에 따라서는 전부원가계산과 부분원가계산으로 나눌 수 있다.
- 정부구매물품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을 목적으로 **사전원가계산**을 실시하게 되므로 원가계산 시점에서 물가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가격을 기준으로 단위당 가격을 결정하며 수입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수입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
 - ° 가격의 유형 : 독가점가격, 최고가격, 행정지도가격, 업체공표가격, 경제단체공표가격, 거래실례가격, 한국은행조사가격, 구매실례가격, 조달청 조사 통보가격,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1-2-2. 간접재료비¹⁹⁾

- 소모재료비 : 기계유,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로서 직접 재료를 가공 또는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²⁰⁾
- 포장재료비 :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로서 예를 들면 송판재, 합판, 포대, 또는 지대, 병, 상표, 포장용 끈을 말한다.

▶ 간접재료비 계산

- 포장비와 같이 재료물량과 제조공수를 계산할 수 있는 간접재료비는 직접재료비(자작품) 계산요령에 준하여 계산

19) 계약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20) 소모성공구, 기구, 비품비 내용연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공구, 기구, 비품의 가치로서 예를 들면 금형류, 망치, 뿔찌, 드라이버 등을 말한다

- 2개 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된 간접재료 또는 소요량 측정이 곤란한 비용은 간접 경비 배부방법에 의하여 계산, 다만,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제조원가 명세서 또는 장부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것을 분석, 배부율을 산정하게 되므로 당기의 생산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때 적합

*** 배부율 산정 방식**

- ° 가액법 : 직접재료비 비례방법, 직접노무비 비례방법, 직접원가 비례방법
- ° 시간법 : 직접작업시간법, 기계작업시간법
- ※ 기업 제조원가명세서 및 원가계산서 직접재료비 합계액은, 작업설 또는 부산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배부 상당금액으로 하며, 직접재료비 가액법은 간접재료비에 비례하여 발생되었다고 예상한 때 적용 그밖에 경비 배부율 산정방식을 준용

▶ 간접재료비의 계산양식(참고)

- 간접재료비 집계표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 간접재료비 (자작품)산출개별표

도면번호	명 칭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 간접재료비(부분품)산출개별표

도면번호	부품별	규격,기호,재질 기타참고사항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가격적용 근거

- 배부기준 및 계산방법

배 부 방 법		배 부 기 준	계 산 공 식
가 격 법	1. 직접 재료비법	제조에든 직접재료비	(일정기간의 간접재료비 총액 ÷ 일정기간의 직접재료비 총액) x 당해제품의 직접재료비
	2. 직접 노무지법	제조에든 직접노무비	(일정기간의 간접재료비 총액 ÷ 일정기간의 직접재료비 총액) x 당해제품의 직접노무비
	3. 직접 원가법	제조에든 직접원가	(일정기간의 간접재료비 총액 ÷ 일정기간의 직접재료비 총액) x 당해제품의 직접원가
시 간 법	4. 직접작업 시간법	직접작업시간	(일정기간의 간접재료비 총액 ÷ 직접작업 연 시간수) x 당해제품에 소요된 작업시간수
	5. 기계작업 시간법	기계 작업시간	(일정기간의 간접재료비 총액 ÷ 기계작업 총 시간수) x 당해제품의 직접재료비
6. 수 량 법		제품의 수량, 중량, 길이	(일정기간의 간접재료비 총액 ÷ 일정기간의 직접재료비 총액) x 당해제품에 소요된 기계작업시간수
7. 복 합 법		상기 여러 방법중에서 2종 이상을 병용하는 방법 (3의 직접원가법은 1,2의 복합)	

- 간접재료비 명세서

배부 방법 ²¹⁾	배부율 산정내역			당해제품 배부기준 해당금액	당해제품 간접재료비 배부계산액	비 고
	총간접 재료비 발생실적액 ²²⁾	배부기준 발생실적액	배부율			

° 포장재료비 계산 : 직접재료비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재료별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포장 구분 ²³⁾	재료명	규 격	단 위	소요량 ²⁴⁾	포장수량 ²⁵⁾	단위당 수량 ²⁶⁾	단 가	금 액

○ 소요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계약상대방으로 적합하다고 예상되는 2개 이상업체(수의계약의 경우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계산서를 분석하여 직접재료비에 대한 평균비율 만큼 배분 적용

1-2-3. 작업설, 부산물, 연산품

○ 작업설물 등은 제품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연산품 등을 말하며, 매각가치 및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그 금액을 재료비에서 차감한다.

° 작업설 : 구상적인 형체가 있는 것을 작업설이라 하며, 구상적인 형체가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은 감손이라 하며, 가공중인 증발, 분산, 가스화, 연화 등으로 소실되는 것을 말한다.

※ 작업설은 작업폐물로서 부스러기, 조각, 파쇄 등으로 구상적인 형체가 있으며 유가물(재생재료) 무가물(폐기물), 공해물(보상물체)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부산물 : 주산물의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유가물로서, 제2차적인 생산물

* 부산물 평가방법

· 매각 가능시는 매각 예상액에서 보관비 및 예상이익을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가공 후 매각 가능시는 가공제품의 예상가액에서 가공비판매비 및 예상이익을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

21) 직접재료비법, 직접노무비법, 직접원가법, 직접작업시간법등

22) 일정기간 업체의 총발생 간접재료비 실적액(결산자료 등 확인금액)

23) 1공포를 구성하는 최종포장,중포장,개포장등 포장단위 구분

24) 포장단위별로 투입되는 재료의 소요량

25) 포장단위별로 포장되는 제품의 수량

26) 소요량을 포장수량으로 나눈 값

- 자사소비시는 절약되는 물품의 구입예상액으로 평가
 - 가공후 자사소비시는 절약되는 물품의 구입예상액에서 가공비의 추산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 연산품 : 연산품이란 같은 공정에서 같은 원료를 사용하여 두가지 이상의 다른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작업설 등 평가 명세서

재료및 부품명	규격	단위	설물잔량 산출내역				회수율 (%)	설물량 ²⁷⁾	단 가	금 액
			제품 중량 ²⁸⁾	소요량 ²⁹⁾	소재 중량	잔량 ³⁰⁾				

27) 잔량 × 회수율

28) 최종 완성된 상태의 부품량 또는 재료량

29) 설물이 발생하는 부품별(재료별)로 당해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량(재료량)

30) [소요량 - 제품중량] 또는 [소재중량 - 제품중량]

2. 노무비

2-1. 노무비 의의

- 노무비는 원가의 부문을 구성하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말하며, 노동력의 소비에 의하여 생긴 인적원가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노무비는 임금 또는 급료라는 형태로 원가액이 파악되므로 노무비와 임금은 이념상 다르다. 임금은 제품제조를 위하여 매입 된 노동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가이고 노무비는 매입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생기는 원가요소이기 때문이다.

2-2. 노무비의 분류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2-2-1. 직접노무비

-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로서 다음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 직접노무비의 계산방법

-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공수)을 산정하고 노무비단가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 임금을 곱하여 계산한다.

$$\text{직접 노무비} = \text{노무공수} \times \text{노무비 단가 (임율)}$$

▶ 노무공수 산정

° 직접노무비의 구성

- 장내운반 : 원료, 원자재, 장내반입, 공정별 이동적재, 보관장소 적재
- 가공작업 : 기계가공(자동기계, 수동기계), 수가공
- 외장작업 : 도금, 도장
- 조립작업 : 부품조립, 납땜, 완제품조립
- 검 사 : 부품검사, 완제품검사
- 시 험 : 제품검사 · 조 정 : 조정 · 포 장 : 포장

- ° 단위작업량에 따른 소요공수 × 노임단가 × (1 + a)
- ° 공정별 제조공수 × 임율(임율은 일당, 시간당, 분다, 또는 초당액을 적용)
- ° 공정별 배치공수의 직종별 작업량(실적생산량 또는 측정량을 기준)에 의하는 경우

공정 명칭	사용 기계	직종 (공종)	배치 공수	연작업 시 간	작업능력 (생산량)	공수원 단위 (생산소요시간)	임율시 간당	단위 단가	수량	합계

- ° 객관적인 생산자료에 의하는 경우 ⇒ 공정별 및 부문별로, 직종별의 작업소요시간을, 표준시간산정방법(시간연구법, 예정시간법등) 에 의하여 단위작업시간을 정하고, 시간당, 임율을 곱하여 계산

▶ 제조공수의 산정

- ° 제조공수의 구성

표 준 시 간		간 접 시 간	
정 미 시 간	여 유 시 간	일상적 간접시간	연차적 간접시간

▶ 표준시간 자료

- ° 표준시간 구성

주작업시간 (ta)	= 단위당시간 (ta)	여유시간(tv)	인적시간(tp)	가공기계애기공품 장착,테어내기(tr) 중심내기(tc) 기계조작(tb) 검측시간(tm)
			관리시간(tr)	
		정미시간 (싸이클시간)	기계시간(th) (또는 수급시간)	
			수급시간(tn)	
준비시간 (tr)	준비여유시간(trv)			
	준비정미시간(trg)			

- 준비시간 (간접시간) : 작업수행을 하기 위하여 작업표, 지도표, 제작도면 등 수령, 도면읽기, 가공에 필요한 공구의 장착, 수집, 금형의 결부 또는 떼어내기와 조정, 공구의 차용, 작업완료 후의 작업장 정리정돈 등으로, 가공시마다 한 번은 준비시간이 발생된다.
- 주작업시간(직접시간) : 지시된 작업에 대하여 부여된 작업시간을 말하며, 단위시간은 가공품 한 개에 대한 가공시간을 말한다.

· 정미시간(직접시간) : 가공단위에 대한 가공에 필요한 소요시간으로, 기계시간과 수급시간으로 구분하게 된다.

* 기계시간 : 기계의 가공속도와 가공품의 형상에 따라 가공하는 소요시간을 말한다.

* 수급시간 :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시간을 조정하는 소요시간

예) 기계가공시 가공품의 장착이나 떼어내기, 중심내기, 기계의 손잡이,"스위치" 조작, 가공품의 가공치수 측정 등, 작업자가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시간.

· 여유시간(간접시간) : 가공시간마다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연시간

주) 직접 가공단위당 여유시간을 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가공정미 시간과 개별로 하여 발생평균시간을 조사하여, 정미시간에 배부하는 방법이 바람직.

° 가공 공정별 표준시간 구성 계산식

· 선반가공 산출식 : $T = tr + (th \times aM \times aB \times tR) (1 + a) Q \times aQ$

T = 롯트당 가공시간 aB = 바이트 계수

tr = 준비시간 a = 여유율

th = 주작업시간 Q = 제작개수

aM = 재질계수

tR = 장착 및 떼어내기 시간 aQ = 개수계수

· 밀링작업시간 : 사용기계, 입삭밀링, 횡삭밀링, 만능밀링반(사용기계의 크기 #~3)가 공품의 다듬정도 ▽▽다듬질을 기준한 것이다

* 작업시간 산식(1개당의 가공시간)

$K = \{ tr/Q + [tr + tb + te = (th \times am) + tM] \times aQ \} \times (1 + a)$

2-2-2. 간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 간접노무비율 산정(질의회신, 회제 125-1906('91. 8. 5))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이상 업체(수의계약의 경우 당해 대상사업)의 최근연도 지불노임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노무비의 합계액에 대한 간접노무비 합계액의 평균비율로 산정한다.

(제조부문 노임 자료 참조)

참고자료 : 제조부문 직종 해설

제조부문 노임자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³¹⁾

31) 본 직종별 임금(일급)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승인 받은 지정통계로서 산업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상시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모집단으로 산업분류별, 종업원규모별 1,000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 임금(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이며, 각종 제수당 및 상여금, 특별급여 등은 제외됨.
- ▶ 직종별 임금은 일급으로 1일 8시간 기준이며, 월급제인 경우 1월을 25일로 환산하였음.
- ▶ 임금산출은 조사대상업체가 2000년 9월중 직종별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일급총액을 직종별 총인원으로 나눈 평균금액으로 하였음.
- ▶ 전체평균은 210개 조사대상 직종 중 조사되지 않은 14개 직종을 제외한 가중평균임.

3. 경비

3-1. 경비 의의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와 구분된다. 단, 경비는 당해 구매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결산 자료 등을 근거로 계상하여야 한다.

3-2. 경비의 분류

3-2-1. 고정경비와 변동경비

- 고정경비 : 조업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과 공과금 등.
- 변동경비 :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비용으로서 동력비, 용수비, 운반비, 수선비 외주가공비 등.

3-2-2. 단순경비와 복합경비

- 단순경비 : 단일원가요소로 구성.
- 복합경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요소가 둘 또는 셋이 복합된 원가 요소.
- 동 력 비 : 용수비, 운반비, 수선비, 시험검사비, 복리후생비와 같은 비목
예) 동력비는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사용료와 공장 동력비 직원의 임금 등이 복합된 것임.

3-2-3.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 직접경비 : 제조 때문에 직접 발생하는 경비로 외주가공비, 설계비, 특허권사용료 등.
- 간접경비 : 다수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의 대부분이 간접경비가 되며 직접경비 이외의 비용.

▶ 경비의 계산

- 제조경비는 생산기간 중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되며 간접경비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직접 경비로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료, 특허권사용료, 납품운반비, 시험검사비 등은 영수증 등에 의하여 직접계산이 가능한 비목도 있음.
정산원가 계산(실제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발생비용이 파악되므로 그대로 원가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원가계산기간의 부담이 될 경비액의 계산방법은 경비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월할당경비, 측정경비, 발생경비로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 분류별 계산

- ° 원할당 경비 : 감가상각비, 임차료, 특허권, 사용료, 보험료, 세금과 공과금, 등은 1개 사업년도를 단위로 하여 지불되므로 월할당 부담액으로 산출.
- ° 지불경비 : 복리후생비, 수리수선비, 운반비, 보험료, 여비, 교통비, 교제비, 외주가공비, 등과 같이 지불액이 당기의 부담액으로 하는 비용으로서 영수증에 의하여 계산.
- ° 발생경비 : 재고감모비(감손비)와 반품차손비 등과 같이 현금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

3-2-4. 제조계정과 제조간접비(부문공통비)

- 부문공통비의 배부기준

- ① 균 분 법 : 부문공통비 총액을 각 부문에 균등하게 할당.
- ② 단일기준법 : 부문 공통비 총액을 단일한 기준에 의하여 배부.
- ③ 복수기준법 : 부문공통비를 원가요소마다 분할하고, 요소별로 성질에 적합한 배부 기준을 사용 배부율을 산정.

- 배부기준의 종류

- ① 수량적 기준 : 면적, 종업원수, 기계운전시간, 재화(연료나 소모품 등)나 용역(전기, 수도 등)의 사용량 등을 기준
 - ② 가치적 기준 : 재료비나 임금 또는 고정자산 가액 등으로 기준
 - ③ 복합기준
 - ㉞ 단일기준을 합계(직접재료비 + 직접임금 + 부문공통비)한 것을 기준
- ※ 동력비 배부계산에 사용된다.

▶ 배부 계산 방법

1. 가액법

- ° 직접재료비 배부법 : 요소별 원가의 구성비 중 직접재료비의 점유율이 클 때 유리, 제조간접비가 직접재료비에 비례하지 않고 재료비의 변동이 심한 품목의 적용에는 부적합.

$$\text{배부율} = \frac{\text{당해기간의 제조간접비 합계액}}{\text{당해기간의 직접재료비 합계액}} \times 100\%$$

- ° 직접노무비(임금)배부법 : 직접노무비가 제품원가의 대부분을 점유했을 때 유리, 제조간접비가 직접노무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합하고 제품별로 소비임율이 다를 때는 부적합

$$\text{배부율} = \frac{\text{당해기간의 제조간접비 합계액}}{\text{당해기간의 직접노무비 합계액}} \times 100\%$$

- ° 직접원가법 : 제원가가 직접원가(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에 비례하여 산출되었을 때 적합하다.

$$\text{배부율} = \text{당해기간의 제조간접비 합계액} / \text{당해기간의 직접원가 합계액} \times 100\%$$

2. 시간법

특정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며 제조간접비가 직접노무비 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하고, 따라서 작업시간과 임금액의 확정 검증이 있어야 한다.

작업시간법으로 계산되는 합당한 비목으로서는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세금과 공과 동력비, 급료 등을 들 수 있다.

- ° 직접작업시간법

$$\text{배부율} = \text{당해기간의 제조간접비 합계액} / \text{당해기간의 직접작업 총시간} = \text{시간당의 간접비배부율}$$

- ° 부문시간 배부법 : 직접임금과 제조간접비를 동시에 직접작업시간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

- ° 기계시간법 : 기계를 1시간 운전하는데 제조간접비가 얼마만큼 소요되는가를 측정하여 이것을 기초로 당해기계가 작업을 받은 제품이 부담할 제조 간접비를 측정하는 방법.

3. 수량법 : 제품의 수량, 중량, 설비의 사용회수, 면적 등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배부방법으로 간접비가 수량에 비례하며 발생

예) 주물, 인쇄업의 조판 또는 인쇄매수 등의 단순제조 공정에 적합

4. 혼합법 : 제조간접비를 비용발생 성격에 따라 비목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비목에 적합한 배부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계산상 복잡하고 기준설정이 모호하여 적정 원가계산방법에서 볼 때 문제점 내포.

▶ 재공품, 타계정 대체액의 평가

- 재공품 및 타계정대체액의 뜻

- ° 재공품 : 결산기말 또는 기초를 현재로 제조현장에서 가공중에 있는 즉, 가공과정의 미완성제품 및 반제품을 말하며, 반제품은 그 상태에서 상품가치가 있는 부분품이 된다.

- ° 타계정대체액 :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부분품, 작업잔품, 재활용작업설 등을 자체사용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이나 저장품에 대체한 금액을 말한다.

- 재공품 및 타계정대체액 평가의 필요성

◦ 재공품, 타계정대체액 등은 그 자체가 제조원가이므로 이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비목별로 분류하여 당기제조비용을 가감계리 함으로써 비목간에 구조비율을 적정하게 할 수 있다.

- 재공품의 평가방법

◦ 재공품의 세부적인 평가내역은 기업내부의 어떤 기준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내용의 적정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회계감사를 필한 결산서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 재공품의 평가방법에는 직접계산법, 균등배부법, 공정도배부법등이 있다.

◦ 직접평가법 : 당해기업에서 평가한 자료에 의하여 원가항목별로 분류 집계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에서 평가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 균등배부법 : 당기제조비용의 원가항목별 금액비율로 균등하게 분류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계산이 용이하며 재공품 금액의 비중이 낮은 경우에 응용한다.

◦ 공정도배부법 : 작업동정의 진척도에 따라 가공비를 차등 분류하는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공정도 측정상의 난점이 있는 것이 문제점이나, 일반적으로 재료비는 전량제조에 투입한 것이므로 재료비의 진척도는 100%이고, 노무비와 경비는 반제품 상태이므로 각 진척도를 50%로 배부하는 방법이다.

▶ 비목별 계산 : 제조경비는 제조원가 중 다음의 비목으로 계상한다.

1. 전력 및 수도광열비는 구매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이라야 하며, 측정경비에 해당된다.

측정경비란 계량기에 의하여 소비량을 측정하여 원가에 산입하는 비목으로 이들의 경비는 원가계산일에 계량기의 검침을 하고, 실제 소비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지급액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예) 원가계산일 직전에 검침을 하였다면 그 요금을 편의적인 소비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공정별 또는 부문별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다면, 그 제품의 생산에 소비된 사용량이 파악되므로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전체에 한 개의 계량기에 의해 전체의 소비량밖에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제조부서, 보조부서, 비제조부서별로 사용량비율, 면적비율, 기계운전시간을 또는 가액배부법 등에 의하여 배부계산할 수밖에 없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

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재료비에 포함되는 운반비는 재료구입과 관련된 부대비용 즉 거래운임, 하역비, 운송보험료, 상하차비 조작비 등이며,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사용재료의 불출가격을 결정할 때 구입가액과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취득가액으로 계리하는 경우와 부대비용을 각각 당해 비용과목에 분류 계리하는 경우가 있다.

- 재료비에 편입되는 부대비의 종류

- ° 거래운임, 하역비, 운송보험료, 구입수수료, 관세 등
- ° 매입사무, 검수 정리, 선별, 정비 등에 소요된 비용 등
- ° 창고에서 창고, 공장에서 공장 또는 판매소에서 판매소로 이관하는데 소요된 운임과 하역비등
- ° 재료를 공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본사에서 구입한 경우의 매입사무비용 등이다.

※ 운임을 재료비에서 편입하는 경우의 산식은 재료취득가액 + 부대비 = 재료출고가격

- 부대비용을 당해 비용과목에 분류하는 사례

- ° 자사 운반차로 운반 : 연료비, 운전 또는 호송인의 여비, 차량상각비, 차량세 등 제조원가의 당해 비용과목에 계리
- ° 운송회사에서 운반하는 경우 : 지불경비로서 제조원가의 운반비 과목에 계리

- 일반관리비(손익계산서)에 계리된 운반비

- ° 주로 제조완료 이후의 납품운반비 또는, 본사 운반비를 말한다. 제조용 재료를 본사에서 구입하여 공장에 운반하는 경우의 운반비를 전항과 같이 제조원가에 조정계산하고, 기타는 일반관리비의 운반비로 계산한다.

- 구매요건에 공사현장도 납품조건의 경우

- ° 동일동종품을 전국오지의 공사 현장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그 비용이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위당 운반비를 운반실적에 의하여 산정하거나, 경비배부 계산 방식에 의할 수 있다.
- ° 제조원가명세서상에 운반비 계리가 없거나, 있어도 배부계산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단위당 운송거리별 운반비를 교통부 고시 구역노선, 화물자동차 운반요금, 일반노선 화물자동차 운임, 교통부 고시 철도화물운임, 관세청 인가 컨테이너 운임율 등을 참고하여 계산해서 구매원가 계산액에 가산할 수 있다.

이 때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운반비는 경비배부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

3.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계산.

- 감가상각이란,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말하며 상각대상 자산에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계산.
 - ° 유형고정자산의 종류 : 물, 구축물, 선박, 항공기, 어구, 어선용구,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기계장치 등이다.
 - ° 무형고정자산의 종류 : 특허권, 상표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수리권, 어업권, 광업권, 전화가입권, 전용전신전화이용권, 전용측선(철도)이용권, 영업권 등이다.
 - ° 생 물 : 생물은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관상용, 흥행용, 기타 이에 준하는 생물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 대상이 안되는 자산
 - ° 사업에 기여하지 않는 자산 : 유휴 미가동 자산, 건설중에 있는 자산, 무형 감가상각 중 어업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존속기간의 경과에 따라 상각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취득한 날부터 사업에 기여한 것으로 취급한다.
 - ° 예외적인 방식 : 특별한 상각의 방법, 특별한 상각율에 의한 상각방법 및 교환법 등이 있다.
 - ° 정액법의 계산 : 상각율 = $1 - n\text{루트}(\text{잔존가액} / \text{취득가액})$ $n = \text{내용연수}$
 - ° 생산량비례법의 계산 : 세법상에서는 광업용 고정자산 즉 기계 및 장치를 말하며, 광물의 생산량에 대응하여 상각 하는 방법

$$\text{취득가액} - \text{잔존가액} \times \text{당해사업년도 채굴량} / \text{당해 광구의굴예정량} = \text{상각액}$$
 - ° 기타 대체법, 연금법, 급수법, 감채, 기금법 등이 있다.
-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처리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계속 사용가능품과 사용불가능품이 있다.
 - ° 계속사용 가능품 : 재산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액의 10분의1에 도달하기까지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도중 지출이 있었을 경우에도 당초의 취득원가에 자본적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10분의 1에 도달하기 까지 상각할 수 있다.
 - ° 사용 불가품 : 평가하여 불용재산으로 분류하고, 매각할 때에는 재분류예) 기계는 고철 등으로 하여 처분.

4. 수리수선비

- 구매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 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 비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동수선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의 증가를 가져오는 대수리수선비는

제외한다.

° 수리수선비는 수리수선과 일부의 개량이 포함되며, 당해계약목적물의 제조 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은 제외, 수선이나 개량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외부수선은 전적에 의하여 수선하고 영수증을 받게 되므로, 수리수선비 과목에 기록하게 되며, 자기수선의 경우 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로부터 구입하거나 자사 보유재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① 자사보유 재료활용은 타계정으로 대체
- ② 외부에서 구입한 재료비는 수리수선비에 계리
- ③ 자사 종업원의 사역은 노무비에 계리

5. 특허권 사용료

- 구매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특허권에는 유상창설이 있고 유상취득이 있다.
 - ① 유상창설 : 자기가 발명하여 특허등록
 - ② 유상취득 : 타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매수
- 타인이 소유하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임차료는 소유자와 사용자간에 협의된 계약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며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선급임차료와 같이 일정한 계약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는 기간 특허료지급을 받으며, 또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으로 충당할 때도 있다.
- 사용료가 생산수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는 직접 경비가 되며 연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고정비가 되므로 월할로 계산하여야 한다.

6. 기술료

- 구매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Know-How³²⁾비 및 동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 기술료는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설비의 개량 등 일반적으로 기초적 연구를 하기 위한 설계, 시험, 연구활동에 따라 생기는 원가로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관리비에 분류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32) Know-How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으로부터 공업소유권이나 기타 기술을 양수받고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통상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서 단순하지 아니한 기술과 그 기술의 사용에 직접 필요한 용역의 도입을 말한다. 공업소유권이라 함은 국내법상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등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이며 Know-How는 공업소유권법에서 보호를 받는 기술이 아니고 산업상의 비방을 말함

기술개발 준비금의 사용범위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즉, 기술개발비, 도입기술의 소화개발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연구시험비, 중소기업 기술지도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비, 공업소유권의 출원 및 실시비,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비,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의 육성에 사용된 비용 등의 계산을 말한다.

7. 연구개발비

- 구매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 연구개발은 사물, 기능, 현상, 등에 관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과 탐구를 말한다.

즉 연구란 제품과 생산, 제조공정 등에 관해서 발전과 기술적 개선을 하기 위한 행동까지를 포함한다는 뜻이 된다.

- 연구개발사업은 2000년대에 이르는 새로운 환경변화와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을 좌우하는 자본, 노동 등 생산소요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의 성격별 체계에 따라 기초연구비(순수기초연구비와 목적 기초연구비)와 응용연구비 및 개발연구비로 분류하며 .따라서 연구개발의 목적에 따라 신제품연구비 현 제품의 개량연구비, 공정개량연구비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구매물자의 완성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 ° 제조과정에서의 부품이나 공정상의 일부분이 규격치 또는 설계치의 부합여부에 대한 시험검사비는 노무비에 계상하고, 완제품의 성능 또는 기능 등, 객관적 입증을 받기 위해서 외부기관(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할 때의 소요비용.

- ° 자체시험검사에 있어서 법령에 의하여 내부검사를 요하는 경우³³⁾의 소요 비용은 별도 계리하여 계상.

9. 지급입차료

33) 내부검사를 요하는 제품이라 함은 예를 들어 소방법령이나 계량법 등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함에 앞서서 국가에 의한 검사 또는 검정을 받아야 하는 제품

- 구매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구매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 토지, 건물, 기계, 기구 등을 빌려 쓰고 임차료를 주는 사용료를 말하며,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 등은 간접경비로서 월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10. 보험료

-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를 제외한다.
- ° 법령상 가입이 강제된 주요 보험의 종류 : 화재보험료(건물, 기계 등), 산재보험(종업원), 운반 곤란지역의 운반(험준한 산악지대 또는 늪지대와 이와 유사한 험난지대), 해송운반 등

11. 복리후생비

- 구매목적물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 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 복리비의 분류
 - ① 법령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복리비 : 성격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처리 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부담액이, 이 계정으로 처리되나 독립회계로 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감가상각비, 수선비, 광열비, 관리인의 급료 등 소속 계정과목에 계리하는 경우도 있다.
 - ② 후생비 : 의무, 위생, 보건, 위안, 수양 등에 요하는 비용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레크레이션비를 말하며 ,여행, 운동회 등에 지급하는 비용 및 경조비도 포함된다.
 - ③ 복리시설부담액 : 병원, 의료소, 체육시설, 기숙사, 식당, 등의 복리후생시설에 관한 부담액을 말한다.
- ° 법인세법상 손비로 규정하는 복리후생비 (13조1항)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소득세법에 의한 우리사주 조합의 운영비,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가족계획사업 지원비, 등

12. 보관비

- 구매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 ° 창고비라고도 하며, 창고업자가 경영하는 영업창고와 자사 창고설비를 운영하면서 독립 회계를 하는 창고 여업이 있다. 창고비의 구성요소는 주로 보관관리 및 감독비, 사무소비 사무원비, 관리자급여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이며, 보관물품의 보관중 재고감모비와 반품차손비 등과 간은 발생경비는 현금지급

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 ° 자사제조의 기술부족, 설비부족, 또는 경제성의 문제로 재료를 외주공장에 주고 가공만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외주가공비는 부분품 또는 반제품과 공정 중의 일부만을 가공하는 것이고, 완제품이나 부분품을 외주하는 것은 아니다.
- ° 재료를 외주공장에 주고 가공이 완료되어 인수할 때 가공비(임금)를 지불하는 것이나 이밖에 사용재료의 잔품 또는 작업설물의 처리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14. 안전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 안전관리란 사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서 그 범위를 정함³⁴⁾
- °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 ° 산업안전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위험작업의 예방조치를 의무화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 교통비, 통신비

- 작업현장³⁵⁾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및 우편료를 말한다.

주) 기업에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는 본사비용이라 하며, 제조원가명세서에는 공장비용이라 하는바 본사와 공장이 각기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을 때, 본사비와 공장비용이 명확하게 구분계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본사와 공장이 같은 장소에 있고 경리부서 직원이 같을 경우, 관리와 제조 원가의 비용 중 그 일부를 혼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혼용비용을 조정하고, 조정 또는 구분이 불가한 때에는 정상비용 여부를 검토하고 전액을 결산서에 의거 계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비중 그 구성비율이 타 비용에 비하여 낮은 편으로 일괄계상의 방법을 채용할 수 있으나 만일, 그 구

34) (산업안전보건 법 : 법률3532호 81.12.31) 내용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5) 제조기업의 경우, 공장을, 공사의 경우, 공사현장을 지칭함

성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부에 의하여 분리작업을 실시 적정한 제조원가의 구성비를 조성 필요.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18. 폐기물처리비

- 구매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 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폐기물의 종류
 - ° 폐기물 : 사람의 생활과 사업활동에 불필요하게 된 물질
 - ° 일반폐기물 :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뇨 등 산업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 ° 산업폐기물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더러운 흙, 잔재물, 폐산,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보건사회부령이 정한 폐기물
 - ° 분뇨처리시설 : 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
 - ° 분뇨정화조 : 분뇨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
 - ° 쓰레기처리시설 : 매립, 소각, 재생분류, 퇴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 하는 시설
 - ° 오수정화시설 : 분뇨와 생활하수를 함께 처리하는 정화시설
 - °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매립, 소각, 분해, 중화, 시멘트,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
- 산업폐기물의 처리
 - ° 사업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산업폐기물 처리업자 (환경청 허가업체)에게 위탁처리

19. 도서인쇄비

- 구매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 등

20. 지급수수료

- 지급수수료는 세금과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
예) 상품의 위탁 매입 또는 판매수수료, 조합비, 협회비, 보증료, 송금수수료, 제품테스트비, 검사비등 타비용 과목에 계리하지 아니하는 수수료.

21. 기타 법정경비

- 기타 법령에서 지급 의무 된 경비

4. 일반관리비

4-1. 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 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4-2.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업 종		일반관리비율(%)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 및 구매	14
	섬유, 의복, 가죽제품의 제조, 구매	8
	나무, 나무제품의 제조, 구매	9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물의 제조, 구매	14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 구매	6
	조립금속제품, 기계 장비의 제조, 구매	7
	기타 물품의 제조, 구매	11
	시설 공사업	6

(별표 3) 일반관리비율

주) 1.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예시) 별표 3 섬유, 의복, 가죽제품의 제조, 구매

* 의복의 제조구입의 경우 기업의 결산서(손익계산서)를 분석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가 8%가 넘는 12%로 산출되었을 때에는 8%로 계상하고 8%이하인 6% 산출되었을 때에는 6%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4-2-1) 일반관리비의 산정방법 :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 일반관리비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광고선전비 + 접대비 + 대손상각비 등)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100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영업비)중 일반관리비로서 인정되는 항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불인정 비용과목	일반관리비 성격비용	비 고
임원보수		○	
급료와 임금		○	
제수당		○	
복리후생비		○	
퇴 직 금		○	
여비교통비		○	
통 신 비		○	
수도광열비		○	
세금과공과		○	
지급임차료		○	
감가상가비		○	
수 선 비		○	
보 험 료		○	
접 대 비	○		
광고선전비	○		
보 관 비		○	
견 본 비	○		
포 장 비		○	
경상시험연구비		○	
개 발 비			
운 반 비			
판매수수료	○		
대손충당금전입액	○		
대손상각비	○		
영업권상각	○		
잡 비	○	○	

5. 이 윤

5-1. 이윤의 의의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타인 역무의 대가이므로 이윤 창출에 직접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윤이 중복으로 계산되므로 제외하여야 한다.

5-2. 이윤계산

이 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25%)

이윤율표

구	분	비 율	비 고
시설공사		1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름
제조구매		25%	
용 역		10%	
수입물품의 구입		10%	

6. 수입물품의 원가계산

6-1. 예정가격 결정기준

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완제품 또는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분품, 완성품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국내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원가계산에 의거 산출한 가격을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6-2. 용어의 정의

- "수입물자대"라 함은 외화표시원가로서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된 CIF³⁶⁾가격을 말한다.
- "물자가격" 이라 함은 FOB³⁷⁾ 가격을 말한다.

6-3. 수입물자대

-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수입면장 등 수입물자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상의 가격으로서 제출업체의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해당 세관으로부터 직접조사 확인한 수입신고서 가격
- 관세청장으로부터 조사 통보된 주요수입물품 표준가격
-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 또는 이 가격에 곤란한 경우에는 OFFE 가격
 - 수입물자대는 다음 각호의 최근가격을 기준한다
 -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격을 기준하는 경우로서 수입가격의 등락이 심할 때에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도 좋겠다.
 - 제4호의 가격을 기준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수입 완료 후 수입면장 등에 의거 확인하거나 정산조건부 계약체결이 요망된다.

6-4. 원가계산의 구성

- 수입물품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의 비목으로 구성하되 비목별 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수입물자대(감정가격) 전술한 3항 각호의 가격으로서 물자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합한 가격명세

36)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37) free on board 본선[화차] 인도

- 수입세제 : 수입물품에 부가되는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 수입부대경비 : 수입물품을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신용장개설수수료,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구내운반비 기타 정상적인 비용은 실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일반관리비 : 수입물자대 및 수입부대비용 합계액에 일반관리비비율을 곱한 금액
- 이윤 : 수입부대비용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6-5. 원가계산방법

수 입 물 품 원 가 계 산 서 (완성품, 부품, 원자재)

CCCN :		CIF :		조사일자 :	
FOB :		입항지 :		수량 및 단위 :	
적 출 국 :		규 격 :		관세율 :	
품 명 :		환 율 :		조사자 :	

비 목	산 출 근 거
1. 수입물자대(감정가격)	단위당 CIF X 환율
가. 물 자 가 격	단위당 FOB X 환율
나. 운 임 및 보험료	
2. 수 입 부 대 경 비	가) + +바)
가. 신용장개설수수료	* 물자가격 x 은행단 협정요율
나. 통 관 료	* 감정가격 x 관세사 보수요율
다. 보 세 창 고 료	* (감정가격 + 관세) x 보세장치장 보관요율 x 보관기수
라. 하 역 비	* 항만정 물자조작 세출요율에 의한다.
마. 국 내 운 반 비	* 화물자동차 요율 또는 철도요율 적용
바. 기 타	* 정상적인 비용은 실비계산
3. 소 계	* 1 + 2
4. 일 반 관 리 비	* (1+2) x 일반관리비율(8%)
5. 이 윤	* (2+3) x 이윤율 (10%)
6. 관 세	* 감정가격 x 관세율
7. 특 별 부 가 세	* (감정가격 + 관세) x 특별소비세율
8. 교 육 세	* 특별소비세 x 30%
9. 부 가 가 치 세(10%)	* (감정가격 +수입부대비용 +일반관리비 +이윤+관세+특별소비세 + 교육세) x10%
10. 합 계	

6-5-1. 수입물자대(감정가격)결정방법

물자대는 정상도착가격(CIF외화 표시가격)에 원가계산 시점의 환율(회국환대 고객전 전환매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환율 적용에 있어서 외화의 매입규모에 따라 외국환 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래실례 환율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준칙 제36조)

▶ 단위당 가격 CIF가격 × 환율

- 환율 : 원가계산시의 외국환대 고객전환 매도율(준칙 제36조)
- 환율 : 전신환 매도율 적용시 (경제신문시점 전신환 매도율)

가. 물자가격

▶ 단위당 FOB 가격 × 환율

나. 공임 및 보험료 계산

- 1) OFFER을 미확정으로 계산하는 경우(정산계약조건) 단위당 FOB가격 × CIF 환산율 × 원가계산시 대고객(T/T) 매도율

- 2) 수입면자에 의하는 경우

관세청CIF환산가격 × 원가계산시 대고객(T/T) 매도율

- 3) 사후 정산 원가계산의 경우

정산도착에 지분된 원비계상(증빙자료에서 정상적인 것에 한함)

- 4) CIF 조건이 아닌 경우는 아래 환산율에 의해 CIF가격을 산정

지역/구분	FOB		CFR		C&I	
	산 박	환 균	산 박	환 균	산 박	환 균
일본중국	1.0098	1.0091	1.0021	1.0021	1.0077	1.0070
아시아	1.0164	1.0110	1.0027	1.0028	1.0137	1.0082
미국·구주	1.0352	1.0194	1.0073	1.0033	1.0279	1.0161

CIF환산율(정상공임과 정상보험료)

근거 : 한국무역협회에서 정한 수입부담금 징수요령 95, 발해의거
CIF조건이 아닌 경우는 아래 환산율에 의해 CIF가격을 산정
1) 기타지역 : 아시아지역 환산율 적용

6-5-2. 수입부대비용 계산방법

수입부대비용은 수입물자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물자대와 수입세제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 신용장개설 수수료

-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외국환은행이 부담하는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부담료적인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FOB외화표시가격에 외국환은행이 협정하는 장부가격(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금융단 수입신용장 개설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매 3개월마다 0.18%로 하고, 최저요금은 8,000원

$$* \text{신용장개설수수료} = \text{FOB외화표시가격} \times \text{환율(장부가격)} \times \text{신용장개설수수료}$$

- 통관료

- 통관료란 수입물자를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입신고로부터 보세구역에 인취하기 까지의 필요한 수수료를 말한다.
- 통관료는 물자대(감정가격)에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은 관세가 보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일반보수(수입) : 감정가격의 0.2%이하. 최고보수액 950,000원

$$* \text{통관료} = \text{CIF가격} \times 0.2\% (\text{관세사 보수요율})$$

- 보세창고료

- 보세창고료란 수입물자 통관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보세장치장에 보관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보세창고료는 물자대(감정가격)와 관세를 포함한 가격에 보세장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승인한 일정의 소정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text{영업용 장치장 기본보관요율(서울세관 감시 47306-835, '95.6.29)}$$

구 분		종 가 율		종 량 율	
		기 본 료	1일할증료	기 본 료	1일할증료
항 공 화 물	1~3일	1.20/1,000	0.24/1,000	1.84원	0.46원
	4~15일	1.25/1,000	0.25/1,000	1.88원	0.47원
	16~30일	1.30/1,000	0.26/1,000	1.92원	0.48원
	31일 이상	1.35/1,000	0.27/1,000	1.96원	0.49원
선박 화물	1~7일	0.6/1,000	0.12/1,000	400원	80원
	8~30일	0.7/1,000	0.14/1,000	480원	110원
	30~60일	0.8/1,000	0.16/1,000	560원	130원
	60일 이상	0.9/1,000	0.16/1,000	640원	150원
부대 사항		* 종가율은 감정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보관료율을 곱하여 계산			
		* 종량율은 항공화물은 kg 당, 선박화물은 M/T당으로 계산하여, 중량톤 또는 용적톤중 큰 것을 적용			
		* 보관료계산시 적용요율은 해당화물의 보관일수에 해당하는 요율을 전기간에 대하여 적용			
		* 보관료는 보관일수에 따른 기본료와 할증료를 합산			

$$\text{보세창고료} = \text{CIF가격} \times \text{보세장치보관요율} \times \text{보관기수}$$

- 하역료

- ° 하역료란 수입물자를 국내도착지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상태로부터 보세장치장에 입고되기까지의 일체의 화물하역처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 하역료는 해당물자의 중량(또는 처리건당)에 소정의 하역료율(또는 하역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 B/T(Berth Term)하역의 경우 원가항목으로 계상할수 있는 비목
 - 선측작업료 - 경비료 - 이송료 - 보세구역 상, 하차비
 - 입고 및 출고료 - 할증료(정상적인 것에 한함)
- ° 긴급을 요한 물자 또는 소량물자로서 항공편을 이용한 물자는 항공화물조작 요율표에 의한다.
 - * 참고 - 하역료율 : 해운항만청 - 보관료율 : 건설교통부
 - 검정료율 : 해운항만청 - 검수료율 : 해운항만청
 - 철도발착지 작업료율 : 건설교통부

- 운반비

- ° 국내운반비란 보세창치장으로부터 수입물자를 출고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 국내운반비는 운반수단, 운반거리, 물품의 중량(용적톤)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요율 또는 철도요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 계산기준
 - 운반차종 및 운반거리에 따라 계산
 - 할증율 및 할인율 등의 적용을 정상적인 항목에 한하여 계산
 - 기타 적용율 및 건교부운임요율에 의거 계산
 - * 운송수단
 - 철도차 취하물 - 철도소화물 - 철도 컨테이너
 - 육로 · 구역화물 자동차(톤급거리) · 구역화물 자동차 차종별대기료
 - 구역화물 전세운임 · 기타로선화물 · 고속버스, 수화물
 - 내육운송 컨테이너

6-5-3. 수입제세

- 수입제세는 수입품이 국내에 수입될 때 부과되는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 수입제세는 수입완성품이거나 수입재료로 계상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가산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수 입 제 세	산 출 기 준
관 세	* 감정가격 x 관세율 = 관세액 * 감정가격 = CIF외화표시가격 x 과세환율 *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 기준 전신화 매도율
특별 소비세	* (감정가격 + 관세) x 특별소비세율 = 특별소비세액
교 육 세	* 특별소비세액 x 30 % = 교육세액
부가 가치세	* (감정가격 + 관세 + 특별소비세 + 교육세) x 부가가치세율 10% = 부가가치세액

4. 계약심사 관련 추천 인터넷 사이트

1. 건설계약연구원 (<http://www.csr.co.kr/>)
 - 기계경비 산출, 질의응답 유권해석, 제비율 적용 기준 등
 - 노임자료, 산업재해보험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확인 가능
2. 한국건설신기술협회 (<http://www.kcnet.or.kr/>)
 - 분야·공종별 신기술 현황 파악
3. 서울외국환중개(주) (<http://www.smbs.biz/index.jsp>)
 - 주요 통화기준율 확인
4. 한국건설자원협회 (<http://www.koras.org>)
 - 품목별 건설폐기물처리 비용, 운반수집 비용 단가 확인
5. (사)한국원가관리협회 (<http://www.kcaa.or.kr/>)
 - 전국 원가분석기관 현황 및 원가분석 실무자료 확인
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www.sw.or.kr/>)
 - SW기업정보 및 통계서비스, SW노임단가, SW사업대가의 기준 등 실무자료
7. 한국전기공사협회 (<http://www.keca.or.kr>)
 - 전기공사 관련 자료 및 신기술 자료, 전기·통신·신호 원가계산 자료 등
8. 한국조경수협회 (<http://www.klta.or.kr/>)
 - 조경수목 가격 확인(조달청, 시중거래가격)
9. 한국지반공학회 (<http://www.kgshome.org>)
 - 지반공학에 관한 자료 및 신기술 자료, 학술지 및 논문집 등
10. 한국건설감리협회 (<http://www.gamri.or.kr>)
 - 감리노임단가 등

11.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 공사 적산기준, 견적기준, 기술자재 등
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http://www.kict.re.kr>)
 - 실적공사비, 건설기술 관련 연구자료, 기술자료 등
13.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 가격정보, 자재단가, 관련법령 확인
14.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go.kr>)
 - 측량노임단가, 수치지도 관련 자료 등
15.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 건설사업대가기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설계감리대가기준, 측량용역대가기준,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등
16.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등
17. 안전행정부 (<http://www.mopas.go.kr>)
 -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감리노임단가 등
18. 환경부 (<http://www.me.go.kr>)
 -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및 동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폐기물 종류 용어 설명, 분리 대상 등
19.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기업경영분석자료 - 업종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이익(윤)율 등

2013년 계약심사사례집 발간

발 행 처 : 제주특별자치도

발 행 일 : 2013년 12월

발행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064-710-6581~6)

편 집 인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강 왕 진

편집정리 : 원가심사담당 행정사무관

건축분야 심사 : 시설6급 김 승 만

물품, 인쇄물, 용역분야 심사 : 행정6급 장운숙

전기·통신·소방분야 및 물품제조분야 : 공업7급 오경섭

토목분야 심사 : 시설7급 김대형

※ 본 사례집 내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예산담당관실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